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토론회

2017. 9. 26(화) 15:00~17:30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진행순서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개회식 (15:00~15:10)	10'	■ 개 회 식	양종삼 (청탁금지제도과장)
		■ 인사말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참석자 소개 (15:10~15:15)	5'	■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신봉기 (경북대학교 교수)
발 제 (15:15~15:45)	30'	■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	안준호 (부패방지국장)
		■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	박 준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15:45~17:00)	75'	■ 공공기관(5) · 박범수(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 최완현(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 권대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 안광훈(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백승달(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기획본부장) ■ 영향업종 관련단체(3) · 임연홍(한국화훼협회 부회장) · 임정수(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장기선(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 시민사회(3) · 나명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송준호(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 변호사) ■ 언론계(1) : 이범준(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 ■ 법조계(2) · 설지혜(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 최계영(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1인 약 5분)
자유토론 (17:00~17:30)	30'	■ 토론자 및 일반 참석자 자유 질의·응답	신봉기 (경북대학교 교수)
폐 회 (17:30)		■ 폐 회	양종삼 (청탁금지제도과장)

CONTENTS

I. 발 제 문

-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 1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 29
박 준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I. 토 론 문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53
-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57
-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61
- 안광훈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 65
- 백승달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기획본부장) 73
-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81
-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87
-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91
-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99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107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115
- 이범준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 121
-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127
-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3

발제문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

안 준 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목 차

I. 권익위 운영현황	5
① 해석지원 체계 구축	5
② 상담 및 질의회신	6
③ 교육 현황	7
④ 맞춤형(시기별·유형별) 홍보 현황	8
II. 공공기관 운영현황	13
① 조사 개요	13
② 신고 접수·처리 총괄 현황	13
③ 위반행위 유형별 현황	14
④ 교육 현황	21
⑤ 청탁금지법 시행 시사점	22
〈 불 입 〉	
청탁금지법 위반 주요 제재 사례	25

I . 권익위 운영현황

1 해석지원 체계 구축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구성·운영

- (구성)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참여로 해석의 합리성·수용성 제고
- (역할)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쟁점사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전파
※ '16.10월~12월 총 7회 회의 개최

□ 청탁금지법 자문위원단 활동 강화

- (구성) 법령 해석의 전문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단 33명 위촉('17.3월)
※ '16년 제1기 자문위원단 구성·활동에 이어 법학, 경제, 교육, 언론,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제2기 자문위원단 구성
- (역할) 유권해석, 해석 기준 마련, 매뉴얼 개정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폭넓게 자문 의뢰, 간담회 개최
※ 총 150건 자문 의뢰, 간담회 3회 개최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확대·개편

- 홈페이지 자료를 청탁금지법 게시판으로 일원화, 게시판 내 통합 검색 기능을 신설하여 검색편의 제공('17.2월)
- 유권해석, 법원판례, 발간자료 등 청탁금지법 관련 전체 자료를 유형별 (부정청탁·금품수수·외부강의 등)로 분류하여 통합검색 기능 확대 개편('17.9월)
※ 보도자료 배포, 위원회 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을 활용하여 각급 공공 기관과 일반국민에 적극 안내

2

상담 및 질의회신

□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전화상담은 총 46,996건('17.9.15. 기준)

○ 분야별로는 학교교육(18,711건, 39.8%), 공공기관(15,424건, 32.8%), 제도 일반(10,122건, 21.5%) 순으로 나타남

< 청탁금지법 전화상담 분야별 현황 >

구 분	합 계	교육분야	공공기관	제도일반	언론분야	신고분야	제도개선
콜 수	46,996	18,711	15,424	10,122	2,115	400	184
비 율	100%	39.8%	32.8%	21.5%	4.5%	0.9%	0.4%

□ '16.8월부터 현재까지('17.9.19.) 유권해석 질의는 총 16,237건 접수, 10,578건(65.1%) 답변 처리

<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현황('17.9.19. 기준) >

구 분	소 계	공 문 (질의건수)	홈페이지 (접수건수)	국민·청렴신문고 (접수건수)
질 의	16,237	5,528	6,768	3,941
답 변	10,578	3,033	4,372	3,173
비율(%)	65.1%	54.9%	64.6%	65.6%

○ 질의에 대한 누적 답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9월 현재 65% 수준

< 청탁금지법 질의답변 월별 누적 현황 >

구 분	'16.9월	'16.11월	'17.1월	'17.3월	'17.5월	'17.7월	'17.9월
답 변	16.1%	29.3%	48.5%	52.4%	54.1%	60.9%	65.1%

※ 청탁금지해석과(9명) '16. 12. 27. 신설

□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역량 강화 지원

- 기관 유형별(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학교·언론사 등)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워크숍 개최 및 집중교육 실시
※ ('16년) 총 5회, 약 2,340명 참석, ('17년) 상반기 총 3회, 약 1,230명 참석
- 각급 공공기관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춘 자체교육 실시 유도
※ ('16년) 총 5기, 424명 수료, ('17년) 총 4기, 329명 수료
- 법 적용대상자의 정확한 법 내용 숙지 및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직종별 매뉴얼·해설집, Q&A 사례집 등 제공

□ 공직자 「청탁금지법」 내면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각급 공공기관 교육훈련과정에 개설된 청탁금지법 교육과정에 대한 강사 및 교육자료 지원, 청탁금지법 사이버 교육(e-러닝) 실시
- 매뉴얼·해설집 개편, 교육 PPT·동영상 제작·배포('17.6~7월)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전파하여 유사 사건 재발방지와 청렴문화 확산('17.4월)

□ 공직자·영향업종단체 등 간담회를 통한 법 이해도·인식 제고

- 주요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간담회 실시('16.12월, 총 2회)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 총 98명 참석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담당자 및 CEO 간담회 실시('17.4월, 8월)
※ 7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직원(4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8월)
- 영향업종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17.8월)
※ 농축산물·외식업 등 7개 영향업종 관련단체 참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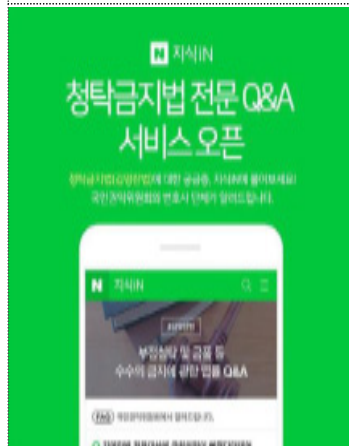
맞춤형(시기별 · 유형별) 홍보 현황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청탁금지법 지속 홍보

-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부터 각종 광고,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법의 인지도 제고

< 광고 및 홍보콘텐츠 세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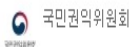
구 분	세부내용
지면광고	▪ 법 시행과 ‘각자내기’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 이미지를 제작하여 14개 중앙일간지에 광고 게재
옥외광고	▪ 모션 그래픽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수단(서울역, KTX, 서울 지하철, 서울 시내버스) 옥외매체에 광고 송출
공익광고	▪ 지상파 및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라는 핵심 메시지 전달(KOBACO 협조)
카드뉴스·웹툰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정부합동 해석지원 TF를 통해 도출된 해석 기준 등을 알기 쉬운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 제작·배포
포털사이트	▪ 네이버·다음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네이버 지식iN, 다음 Tip에 청탁금지법 특별페이지 개설·운영



지식iN 청탁금지법 FAQ | 김영란법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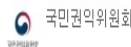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면 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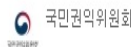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가? 정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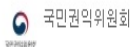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가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 대접했습

이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B,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빈발질의 · 오해사항 바로알기 집중 추진

- 수요자 유형별, 관심 주제별 빈발 질의와 구체적 사례별 행동수칙 (Dos and Don'ts) 내용을 알기 쉽게 재구성, 국민들의 관심 유도

< 빈발질의·오해사항 바로알기 세부내용 >

연 번	주 제	홍보물	시기
1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FAQ	3월
2	공식적 행사 금품수수 허용 범위	FAQ	5월
3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FAQ	6월
4	퇴직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FAQ	8월
5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FAQ	
6	유치원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리플릿	9월
7	유치원 교직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리플릿	
8	초·중·고 교직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리플릿	
9	초·중·고 학생 ·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리플릿	
10	어린이집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11	학교 운동부지도자 관련 주요 질의	리플릿, FAQ	
12	을지연습 시 금품등 수수 관련 주요 질의	FAQ	
13	청탁금지법 오해 10(일반국민·공직자, 2종)	카드뉴스	
14	청탁금지법 허용 10(일반국민·공직자, 2종)	카드뉴스	
15	청탁금지법 불허 10(일반국민·공직자, 2종)	카드뉴스	
16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리플릿, 인포그래픽	
17	사교·의례 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FAQ	
18	공직자 관련 단체 기준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FAQ	
19	선물·음식물·경조사비 가능 범위	인포그래픽	
20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FAQ	

□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바로알기 집중 홍보('17.8~10월)

○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보도자료 배포(8월)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

< 보도자료 주요내용 >

- **(오해1)**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무조건 금지된다?
 - ☞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 있음
- **(오해2)**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 ☞ 공직자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음
- **(오해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 ☞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
 - ☞ 다만, ▲인허가 신청인, ▲단속·조사 대상자 등으로부터는 금액에 상관 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음

○ 전 공공기관 등에 공문 시행을 통해 공직자·기업인 등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세부 설명자료 제공(8월, 9월)

※ 설명자료 : 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② 유형별 사례로 풀어 쓴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42개), ▲지자체(241개),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635개), 교육청(17개) ▲대한상공회의소·소상공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943개 기관 배포

- 일반국민이 추석 선물 허용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스터·인포그래픽·카드뉴스·카툰 등 다양한 시각자료를 제작·배포(9월)

- (포스터) 추석 명절 선물 관련 포스터 약 2만부

< 포스터 배부 세부내역 >

- (민원인이 많은 행정기관 등)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5,550부
-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기관) KTX역, 고속도로휴게소, 우체국, 농협 등 10,520부
- (전통시장·마트) 전통시장(3,600부),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자체발간)

- (인포그래픽) 선물 가능범위 인포그래픽 2종

※ 권익위 소식지 「국민권익」(9.11, 1만부), 문체부 「위클리 공감」(9.25, 3만부), 각 부처(금융위·해수부·통계청 등) SNS 및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재

- (카드뉴스·카툰) 정책브리핑에 추석 선물 관련 카드뉴스 게시, 만화형태의 카툰을 제작하여 홍보매체에 게재

※ 문체부 정책홍보매체인 「카툰공감」(9월 마지막주, 3만부) 게재

- 일반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방송, 광고매체 등 활용 홍보(9~10월)

- (TV방송) ‘추석선물 제대로 알기’ 방송 편성(5개 방송사)

- (자막광고) TV 자막광고(20개 방송사 송출), 전국의 민간·공공기관 전광판 활용 홍보(116개)

< 자막광고 문안 >

-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친지·이웃 간 제한 없음, 공직자에게는 업무 관련 없으면 5만 원 이상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110>

- (라디오광고)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광고 송출(3개 방송사, 80회)

< 참고 : 추석선물 바로알기 홍보자료(포스터, 인포그래픽 등) >

□ 포스터, 인포그래픽(2종)



□ 카툰, 카드뉴스



Ⅱ. 공공기관 운영현황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법 시행 이후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현황과 법 시행 성과 파악
- 조사대상 기관 : 총 23,874개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공직유관단체
 - ※ 언론사는 자료제출 지연으로 향후 별도분석 예정
- 조사내용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교육현황 등
- 조사대상 기간 : '16.9.28. ~ '17.7.31.(10개월)
 - ※ '17.4월 조사는 시행 6개월간('16.9.28.~'17.3.10.)의 운영실적을 조사

2 신고 접수·처리 총괄 현황

< 신고 접수 및 처리 총괄 현황표 >

구 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계
신고 접수		242건	620건	3,190건	4,052건
신고 처리	과태료 부과요청	3건(4명)	85건(181명)	-	88건(185명)
	수사의뢰	8건(15명)	25건(107명)		33건(122명)
	소계	11건(19명)	110건(288명)		121건(307명)
제재	과태료 부과 (징계부가금 포함)	1건(1명)	28건(45명)	-	29건(46명)
	기 소 (기소의견송치 포함)	1건(1명)	10건(47명)		11건(48명)
	소계	2건(2명)	38건(92명)		40건(94명)

* 외부강의 지연신고·미신고는 과태료 부과요청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례금 초과 수수만 과태료 부과 대상

**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취합한 자료로 일부 중복·누락 가능

○ 총 신고 접수

- 위반신고 총 건수는 4,052건으로, 부정청탁 242건, 금품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등 3,190건

※ 총 건수는 시행 6개월 때(2,311건) 대비 1,741건 증가

○ 총 신고 처리

- 공공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총 121건(처분 대상자 총 307명)으로 시행 6개월(57건) 대비 64건 증가

○ 총 제재 현황

- 과태료 부과 21건(처분대상자 34명), 징계부가금 부과 8건(처분 대상자 12명), 기소(기소의견송치 포함) 11건(처분대상자 48명)으로 제재 사례가 증가

※ 기소 11건 중 판결확정은 4건 (청탁금지법 위반 1건, 뇌물죄 3건)

3 위반행위 유형별 현황

1 부정 청탁

< 부정청탁 신고 접수처리 현황 >

신고접수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검 · 경찰청 수사의뢰			신고접수 기관 조사 중	종 결
	소계	과태료 부과	과태료 재판중	소계	기 소	수사중		
242건	3건 (4명)	1건 (1명)	2건 (3명)	8건 (15명)	1건 (1명)	7건 (14명)	13건	218건

- (신고 접수) 부정청탁 신고는 총 242건으로, 시행 6개월(135건) 대비 107건 증가

- 제3자 신고가 201건(83%)으로 공직자등의 자진신고 41건(1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입법취지대로 청탁금지법이 청탁의 거절명분으로 작용하여 공직자의 자진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동일 부정청탁이 재차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분석

- (신고 처리) 과태료 부과요청, 수사의뢰된 사건 수는 11건(처분 대상자 19명)으로 시행 6개월(5건) 대비 6건 증가

※ 신고처리 기준 (법 제22조 및 제23조, 시행령 제5조 및 제31조)

▲과태료부과 요청대상 : 제3자를 위해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수사의뢰 대상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사건은 3건(처분대상자 4명)
-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8건(처분대상자 15명)
- 진료, 채용, 학교 입학·평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발생

< 부정청탁 업무분야 (수사의뢰·과태료부과요청) >

진료·시설이용	채용·전보 등	학교 입학·평가	검사·승인·검정 등	기타	계
3건	3건	2건	2건	1건	11건

- (제재 현황) 과태료 부과 결정 1건, 기소처분 1건

- 소방서 직원에게 특정회사의 시설검사 위반사실 묵인 청탁을 한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현재까지 최고금액 과태료)

- (조사중 및 종결) 신고접수 공공기관이 조사중인 사건은 13건, 법령상 종결사유로 인한 종결은 218건

※ 신고내용·증거자료 등 보완요구 불응, 신고내용과 사실관계 불일치, 법 적용대상 아님 등의 사유로 종결 처리(시행령 제14조)

2 금품등 수수

< 금품등 수수 신고 접수처리 현황 >

신고접수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검·경찰청 수사의뢰			신고접수 기관 조사 중	종 결
	소계	과태료 부과 (징계부가금 포함)	과태료 재판중	소계	기 소 (기소의견송치포함)	수사 중		
620건	85건 (181명)	28건 (45명)	57건 (136명)	25건 (107명)	10건 (47명)	15건 (60명)	70건	440건

○ (신고 접수) 금품등 수수 신고는 총 620건으로, 시행 6개월(412건) 대비 때보다 208건 증가

-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401건(64.7%)으로 제3자 신고 219건(35.3%)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신고 처리) 과태료 부과요청, 수사의뢰된 사건 수는 총 110건으로 (처분대상자 288명) 시행 6개월(총 52건) 대비 58건 증가

※ 신고처리 기준 (법 제22조 및 제23조, 시행령 제19조 및 제31조)

▲ 과태료부과 요청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 수사의뢰 대상 :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공공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사건은 85건(처분대상자 181명)
-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25건(처분대상자 107명)

○ (제재 현황) 과태료 20건(처분대상자 33명), 징계부가금 부과 8건(처분대상자 12명), 기소(기소의견송치 포함)처분·형벌부과 10건(처분대상자 47명)

※ 기소처분 및 형벌부과 10건 : 청탁금지법 위반(벌금 500만원) 1심 확정 1건, 뇌물죄 3건, 재판 중 3건, 기소의견 송치 3건

○ (조사중 및 종결) 신고접수 공공기관이 조사중인 사건은 70건, 법령상 종결사유로 인한 종결은 440건

※ 신고내용·증거자료 등 보완요구 불응, 신고내용과 사실관계 불일치, 법 적용대상 아님 등의 사유로 종결 처리(시행령 제14조)

□ 자진신고 사례

- 전체 금품수수 신고의 64.7%가 공직자들의 자진신고에 해당하며, 과태료부과 요청·수사의뢰 사건 중에서도 수사·인허가·심의 등의 분야에서 고액의 금품 자진신고도 다수

< 금품 수수 자진신고 사례 >

제공자	제공 대상자	제공 금액
사건 피의자	담당 수사관	2천만원
허가 신청자	업무 담당자	1천만원
교육재단 임원	공익법인 업무 담당자	3백3십만원
시공사 직원	공사 감리자	3백만원
등급결정 이의신청자	업무 담당자	2백만원
출소자	교도소 직원	2백만원
미상	지방자치단체 직원	2백만원
사건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백1십만원
사건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백만원
심의대상자	심의위원	1백만원

□ 사건금액 현황

- 과태료부과요청·수사의뢰된 사건(110건)의 금액은 총 2억3천364만원

< 금품수수 사건 금액 현황 >

1천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 5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5건	6건	14건	10건	27건	48건

- 100만원 초과 사건은 25건이며 그 중 1천만을 넘는 사건도 5건, 주로 공사감독, 후원·협찬 요구, 학교 운동부 등 분야에서 발생

< 고액수수 사건 사례 >

구 분	사건 개요
공사감독	▪ 공사 시공사의 직원이 공사 감리원에게 계약상 지급의무 없음에도 시간외 수당 1천7백6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
후원·협찬	▪ 언론사 임원이 타 기관 주최 행사를 명목으로 지역기업 등에 후원·협찬을 요구하여 1천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학교 운동부	▪ 학부모 18명이 대학 운동부 감독에게 3천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

- 10만원 이하 소액 사건(48건)은 주로 각종 신청의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한 선물을 공직자가 자진신고

☞ 소액 금품도 직무관련 내용·정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제공자에 2~4배 과태료 부과

< 제공금액의 2~4배 과태료 부과 결정례 >

제공자	제공 대상자	제공 금액	과태료
법원 관내 변호사	해당 법원 소속판사	2만8천원	4배 부과
물품생산업체 임원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7만8천원	3배 부과
고소인	담당 수사관	4만5천원	2배 부과
분쟁조정 신청자	담당 공직자	3만3천원	3배 부과
행정심판 피청구인	심판담당 공직자	1만8백원	2배 부과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만원	2배 부과
납품업체 직원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9천6백원	2배 부과

□ 위반행위에 가담한 다수 제공자 제재

- 2인 이상이 위반행위 가담 시 각자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전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연루자 총수	제공자	수수자	수수액	진행 상황
26명	학부모 22명	학교 운동부 감독 및 교사	2명의 운동부 코치 퇴직위로금 800만원 요구 및 제공 약속	수사 중
21명	지자체 부서원 20명	지자체 부서장	98만원 상당의 황금 열쇠	과태료 부과 요청
18명	후배교수 17명	선배교수	764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수사 중
9명	학과 동아리 학생 9명	교수	34만원 상당의 상품권, 케익 등	과태료 부과

□ 제공자와 소속 법인 양벌 제재

- 소속 임직원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임직원 외에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4건)

☞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법인도 제재

제공자	수수자	제공액	과태료 부과	
			제공자	소속 법인
업체 관리이사	검사 담당 공무원	7.8만원	20만원 (제공액의 3배)	20만원 (제공액의 3배)
업체 종업원	조사 담당공무원	9.6천원	2만원 (제공액의 2배)	2.8만원 (제공액의 3배)
공연기획사 대표	담당 공직자 2명	10만원	20만원 (제공액의 2배)	20만원 (제공액의 2배)
업체 소속 직원	민원 담당 직원	10만원	20만원 (제공액의 2배)	20만원 (제공액의 2배)

□ 소속 공공기관의 징계부가금 부과

○ 공공기관도 소속 공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나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8건)

○ 징계부가금 부과시 공공기관 간 제재의 불균형 일부 발생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5배 이내 징계부가금 부과

제공자	수수자	수수액	징계부가금	수수액 배수
부하 직원	상급자	3.1만원	수수자 9.4만원	3배
직무관련자	지자체 공무원	25만원	수수자 50만원	2배
직무관련자	지자체 공무원	13만원	수수자 26만원	2배
직무관련자	지자체 공무원	50만원	수수자 50만원 (제공자는 과태료 150만원)	1배 (3배)
직무관련자	경찰관	66.4만원	수수자 66.4만원	1배

□ 형사법으로 제재가 곤란한 사각지대 규율

○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나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정 형이 높은 뇌물수수로 처벌

구 분	사건 개요	제재 현황
청탁금지법 제재	▪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하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	수수자 벌금 500만원
형법 제재	▪ 형사사건 피의자 동거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2천만 원을 제공, 수사관이 자진 신고	제공자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민원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2백만원을 제공, 담당자가 자진 신고	제공자 벌금 100만원
	▪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의 차량에 현금 100만원과 양주를 놓고 간 것을 수사관이 발견하고 자진신고	제공자 벌금 100만원

3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 위반신고 접수 · 처리 현황 >

신고 접수 계	신고 유형		조사 중	종결
	자연신고 · 미신고	초과사례금 수수		
3,190건	3,172건	18건	1,130건	2,060건

- (신고 유형) 자연 또는 미신고가 3,172건(99.4%)으로 대부분을 차지
 - 자연 · 미신고 사례는 기존 외부강의에 대한 규율을 받지 않던 기관에서 많이 나타남
 - ※ 학교·학교법인(1,570건, 49%)과 공직유관단체(1,341건, 42%)에서 높은 비율
- (신고 처리) 1,130건에 대해 현재 조사 중
 - ※ 초과사례금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부과요청 대상에 해당(자연 · 미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교육 현황

- 공공기관(23,874개)이 소속 공직자에 실시한 청탁금지법 교육 횟수는 98,017회로 기관당 평균 4.1회 교육 실시
 - 소속기관이 많은 중앙행정기관의 교육 횟수(98.9회)가 가장 많아, 제도 적응 · 숙지를 위해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
 - 학교·학교법인(3.6회), 공직유관단체(7.3회)는 교육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청탁금지법 교육 현황 >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관 수	교육 횟수	기관당 평균 횟수
헌법기관	5	52	10.4
중앙행정기관	53	5,240	98.9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포함)	260	3,519	13.5
공직유관단체	1,089	7,936	7.3
학교·학교법인	22,467	81,270	3.6
계	23,874	98,017	4.1

5

청탁금지법 시행 시사점

□ 대대적인 청탁금지법 교육이 공직의 청렴의식 제고 계기로 작용

- 소속 공직자 대상으로 총 9만 8천회의 교육이 실시되어 법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고 청렴성·윤리의식이 강화

☞ 타 기관유형보다 교육이 저조한 학교·학교법인 및 공직유관단체의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다만, 과거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기관에서 외부강의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가 다수 발생

☞ 신고절차 및 방법에 대해 집중 안내하면서 절차 간소화, 신고기간 조정 등 외부강의 신고제도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직자의 높은 자진신고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청탁금지법상 자진신고가 과거 은밀히 행해졌던 부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제공자에 대한 적발·처벌까지 이어지는 성과

※ 공직자등의 금품수수 자진신고율 : 62%(시행 6개월) → 64.7%(시행 10개월)

- 법 시행 이후 처벌된 사례들 상당수가 법상 의무화된 공직자들의 자진신고로부터 비롯되어 제공자를 처벌

※ 뇌물죄가 적용된 청탁금지법 자진신고 사례

- ▲ 피의자 동거인이 담당수사관에 2천만원 제공
- ▲ 장해등급결정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에게 2백만원 제공

- 높은 금품수수 자진신고율은 공직사회의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내 주며, 공직신뢰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관행화된 부정청탁의 적발·감소에 기여

-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채용, 입학, 진료, 시설 이용 등)에서의 부정청탁 신고와 이를 통한 적발이 현실화

※ 부정청탁 신고 사례

- ▲ 정상적인 예약·순서없이 공공 골프장, 의료기관 진료 우선 이용
- ▲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을 정원 외로 추가 입학

- 부정청탁은 상대적으로 신고건수가 적지만, 하급자에 대한 위법사항 묵인 청탁 사례에서 현재까지 최대 과태료 금액인 1천만원 부과

□ 형사법으로 제재가 곤란한 사각지대를 청탁금지법으로 규율

- 금품수수과 결부되지 않은 부정청탁 자체를 제재하고, 대가성 입증의 쉽지 않아 형법상 처벌이 어려운 금품 제공도 제재

- ▲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하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부과(1심 확정)

- 고액의 금품이지만 대가성 입증의 어려운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액의 금품수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례

- ▲ 학교 운동부 감독에게 학부모들이 3천 500만원 제공
- ▲ 시공업체에서 공사 감리원에게 1천 76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
- ▲ 대학교수가 후배교수들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퇴임선물로 수수

□ 소액 금품수수라도 업무 공정성 훼손시 엄정 대처

- 법원 판례는 수사·조사·검사·심판 등 고도의 공정성·객관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금품 제공에 대해 소액이라도 엄정하게 제재

※ (관내변호사 → 판사) 2만8천원 식대 몰래 지불 : 과태료 4배

(물품생산업체 → 물품검사 담당자) 7만8천원 선물 : 과태료 3배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부패에 자체적으로 대응

- 소속 공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제재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이 강화되는 경향
- 다만,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수수금액의 2~4배)하는 법원의 판례와 달리 부패금액의 1배만을 부과하는 사례 일부 발생
 -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50만원 금품 수수 제재 사례
 - ▲ 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부과 : 150만원(3배)
 - ▲ 수수자에 대한 소속 공공기관 징계부가금 부과 : 50만원(1배)
 - ☞ 공공기관 징계부가금 부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양벌규정으로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강화 유도

- 기존 형법과 달리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 감독을 소홀이 한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
 - ※ 기업 양벌 제재 사례
 - ▲ 공공 공연장에서 공연예정인 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관리 공직자에게 4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제공자와 법인에 과태료 20만원 부과
 - ▲ 업체 직원이 민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현금 10만원을 동봉 업체 직원과 해당 법인에 과태료 20만원 부과
- 향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소속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및 청렴교육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부정청탁 (1건)

사건개요	과태료 금액
소방서장이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회사의 법 위반 사실 목인을 지시	- 과태료 1천만원 ※ 당사자 불복(즉시항고)

□ 금품등 수수(29건)

① 벌금 부과 (1건)

사건개요	벌금액
공공기관 직원이 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업체 임원으로 부터 200만원 수수	수수자 500만원

② 과태료 부과 (21건)

사건개요	과태료 금액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후 사건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100만원을 두고 감	제공자 300만원(3배)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시공사 이사로부터 100만원 수수	수수자 300만원(3배)
-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발주 공공 기관 직원 등 A, B, C에게 총 48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 ※ A는 18만원, B는 11만원, C는 19만원 수수 ※ 수수자 A, B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제공자 150만원(3배) - 수수자 C 50만원(3배)
-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수수 ※ 징계부가금 부과 건과 동일 사건으로 수수자는 징계부가금 부과	제공자 150만원(3배)
전출하는 직원의 송별회에서 직무관련자가 전별금 명목으로 30만원 제공	- 제공자 60만원(2배) - 수수자 60만원(2배)
피고소인이 사건 담당자 옷 주머니에 20만원을 몰래 넣어두고 감	제공자 50만원(2.5배)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직무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10만2천원 상당의 음식물, 3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받음	- 수수자 42만원(3배) - 제공자 2인 각각 30만원, 12만원(3배)

▪ 전기공사 업체 직원이 공공기관 사옥에서 전기공사를 한 후 공공기관 직원 책상에 1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두고 감	▪ 제공자 30만원(3배)
▪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10만원을 제공	▪ 제공자 20만원(2배)
▪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 제공자 20만원(2배)
▪ 업체 관리이사가 자사 생산품의 검사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7만8천원 상당의 선물 제공	▪ 제공자 20만원(3배) ▪ 제공자 소속 법인 20만원(2배)
▪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2인이 공연예정 공연기획사 대표로부터 각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제공자 20만원(2배) ▪ 제공자 소속 법인 20만원(2배) ▪ 수수자 2인 각각 10만원(2배)
▪ 업체 소속 직원이 민원 담당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10만원을 동봉	▪ 제공자 20만원(2배) ▪ 제공자 소속 법인 20만원(2배)
▪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천원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	▪ 제공자 11.2만원(4배)
▪ 행정심판 청구인이 자신이 청구한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로 5만원 상당 우편환을 보낸 사건	▪ 제공자 10만원(2배)
▪ 민원인이 업무 담당 직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만3천원 상당의 한과 한 상자를 택배로 제공	▪ 제공자 10만원(3배)
▪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	▪ 제공자 9만원(2배)
▪ 학과 동아리 학생 9명이 3~4만원을 각출하여 상품권, 케익 등 총 34만원 상당 선물을 대학 교수에게 제공 ※ 나머지 제공자들(7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제공자 2인 각각 6만원(2배)
▪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9천6백원 상당의 과자제공	▪ 제공자 2만원(2배) ▪ 제공자 소속 법인 2.8만원(3배)
▪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심판 담당자를 면담하면서 1만 8백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	▪ 제공자 2인 각각 2.2만원(2배)
▪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조사가 끝난 후 사건 담당자에게 1만원을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제공	▪ 제공자 2만원(2배)

③ 징계부가금 부과 (8건)

※ 과태료 부과 사건(1건)과 중복

사건개요	징계부가금액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수수	수수자 50만원(1배) ※ 제공자 과태료 150만원(3배)
지자체 직원이 관내 업체 대표자 3명으로부터 각각 12만8천원, 19만7천원, 41만1천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음	수수자 736만원(1배)
경찰관 2명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각 66만4천원 상당의 향응 수수	수수자 2인 각각 66.4만원(1배)
지자체 직원 A, B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각각 28만8천원, 지자체 직원 C는 13만5천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 수수	- 수수자 A 60.5만원 ※ 법 시행 전 금품 수수 포함 - 수수자 B 28만8천원 (1배) - 수수자 C 13.5만원(1배)
지자체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25만원 상당 골프 접대 수수	수수자 50만원(2배)
지자체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3만원 상당 골프 접대 수수	수수자 26만원(2배)
상급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평가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3만1천6백원 상당 향응 수수	제공자 9.4만원(3배)
지자체 과장과 팀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로부터 1인당 5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음	수수자 2인 각각 5만원(1배)

발제문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

박 준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청탁금지법 1주년 토론회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주요 주체들의 인식조사 결과 :

일반국민, 법적용대상, 영향업종

박 준 부연구위원

2017년 9월 26일 (화)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I. 조사 배경
- II. 조사 결과
- III. 시사점

I. 조사 배경

I. 조사 배경

1. 조사의 필요성

□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시행의 성과를 점검

-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 11월 조사에 이은 후속 연구
- 법 시행 직후 국민들이 가졌던 기대와 호응, 우려 등이 1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

□ 청탁금지법 시행 과정상 개선점 파악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5-10 가액기준”, “외부강의 관련 규정”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파악

⇒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조사 방법

□ 조사문항

일반국민/법적용대상	영향업종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 기준 -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변화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 청탁금지법 정착 여부 및 개선 방향	- 음식물, 선물 가액 기준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업상 변화 -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 - 청탁금지법 정착 여부

□ 일반국민, 법적용대상, 영향업종 등 총 3,010명을 대상으로 조사

- 일반국민, 공직자, 영향업종 : 전화면접조사
- 언론인 : 웹조사
- 교육계 : 전화면접조사와 웹조사 병행

조사기관 : **Hankook Research**

2. 조사방법

그룹		구성	표본 수		표본오차 (95%신뢰수준)	조사기간
일반국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3.1%	2017.8.18 ~ 8.21
법적용대상	공직자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800명	500명	± 3.5%	2017.8.23 ~ 8.2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00명		
	언론인	중앙지/지방지 기자, 신문기자/방송기자, 인터넷신문 기자	204명		± 6.9%	2017.8.21 ~ 9.4
	교육계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	406명		± 4.9%	2017.8.21 ~ 9.4
영향업종		음식점업, 농수축산화훼업(유통)	600명		± 4.0%	2017.8.24 ~ 9.5

I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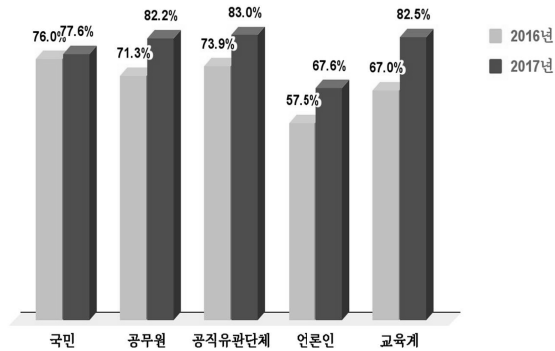
1.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개인의 인식과 행태 변화

1. 개인의 인식과 행태 변화

□ 법 시행 이후 관행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응답이 모든 집단에 걸쳐 상승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원 등이 80%를 상회

"관행적인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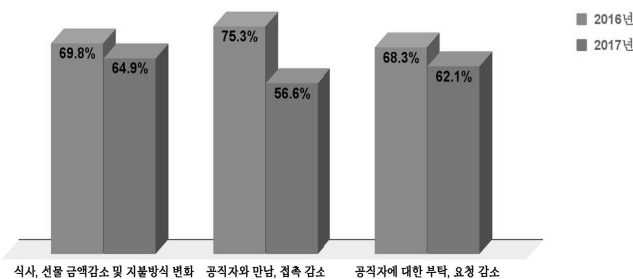
1. 개인의 인식과 행태 변화

□ 일반국민들의 행태변화 인식은 작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긍정적 측면도 존재

- “공직자와의 만남이나 접촉 감소” 응답이 18.7%p 감소

⇒ 법 시행 직후 나타난 ‘과도한 움츠러들기’ 완화

일반국민: 본인 및 주변에서의 행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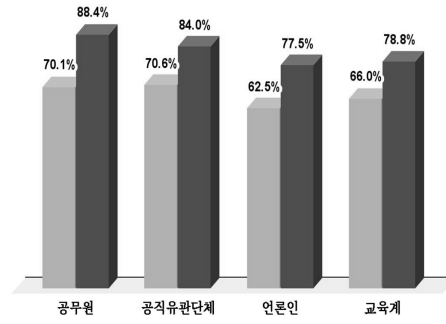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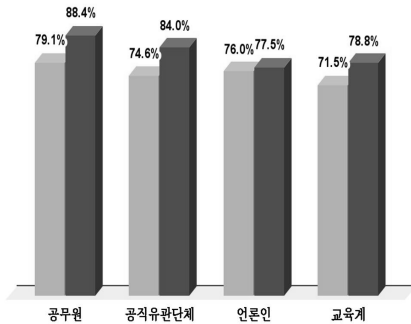
1. 개인의 인식과 행태 변화

□ 공직자들이 업무상 받는 청탁은 감소하는 추세

- 불필요한 만남이나 인맥을 통한 부탁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증가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만남이나 접촉 감소"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감소"



1. 개인의 인식과 행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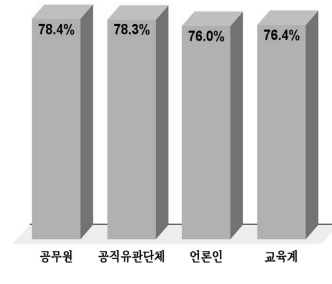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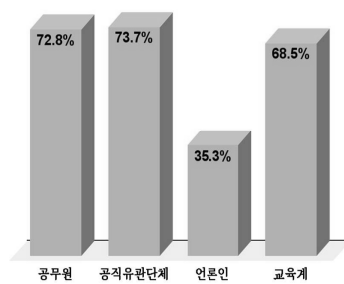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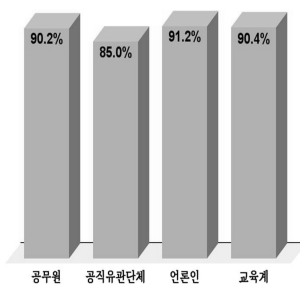
□ 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자의 접대나 선물 관행도 감소

- 더치페이 문화 정착 속도는 직종별 차이 존재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 선물제공 관행 감소"

"직무관련자와의 더치페이가 일상화"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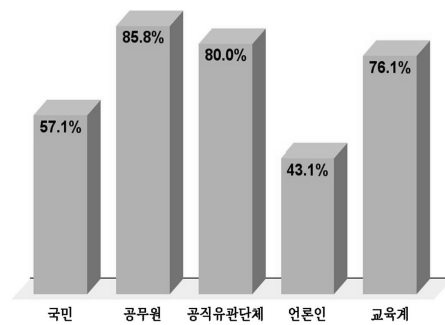


1. 개인의 인식과 행태 변화

□ 국민들이 체감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향상은 공직자들과 차이

- 일반국민은 57.1%, 반면 법적용대상자들은 평균 75.6%가 긍정 응답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 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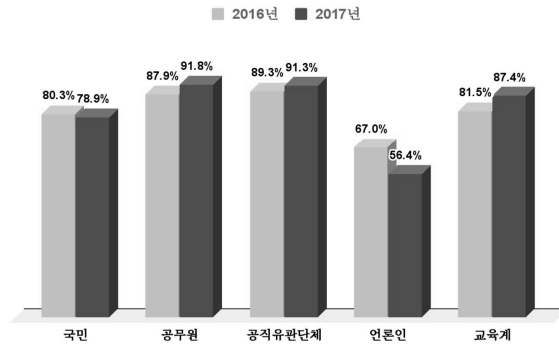
2.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2.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 부정부패 개선

□ 공직사회에서 청탁금지법의 부패방지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

- 언론계에서는 10%p 감소
- 일반국민도 다소 감소했으나 긍정적 인식이 79%로 여전히 높은 수준

"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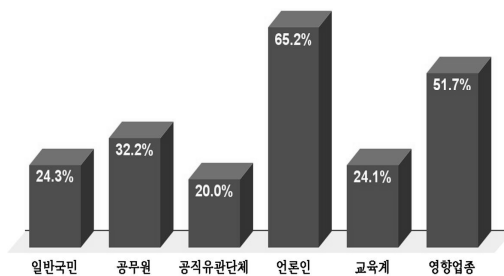


2.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 거시경제적 영향

□ 일반국민과 공직자의 20~30% 정도가 법 시행의 경제적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식

- 반면 언론계와 영향업종에서는 다수가 경제적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식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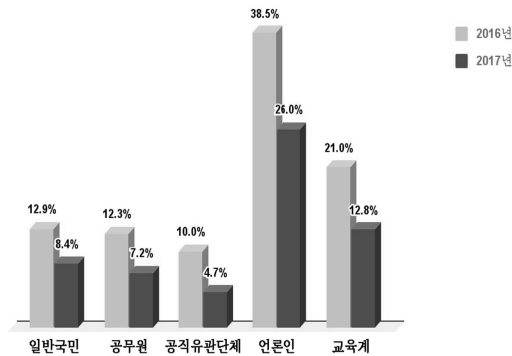


2.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에 미친 영향

□ 법 시행에 따른 사회생활/업무수행 차원의 부작용 인식은 2016년 대비 모든 집단에서 감소

- 특히 언론계에서 12.5%p 감소

"법 시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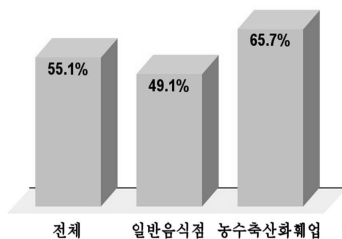


2.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 영향업종의 사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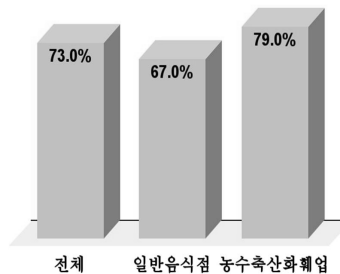
□ 일반음식업의 49%, 농수축산화훼업의 66%, "법 시행으로 인해 매출 감소"

- 업종 전반의 매출현황을 본인 사업체의 매출현황보다 더 비관적으로 인식

"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



"법 시행 이후 업종 전반의 매출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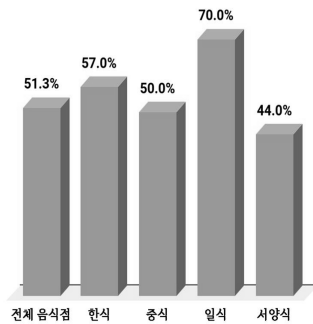


2.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 영향업종의 사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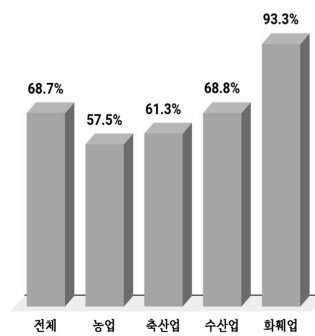
□ 일반음식업 51%, 농수축산화웨이업 69%, “기준금액 이상의 상품 매출 감소”

- 일식과 화웨이업에서 기준금액 이상 상품 매출 감소 업체 비중 최대

일반음식업 :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매출이 감소”



농·수·축산·화웨이업 : “5만원이 넘는 상품 매출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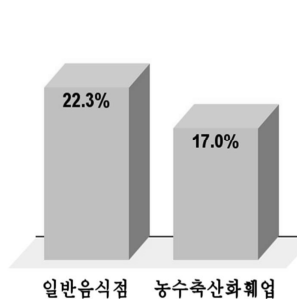


2.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 영향업종의 사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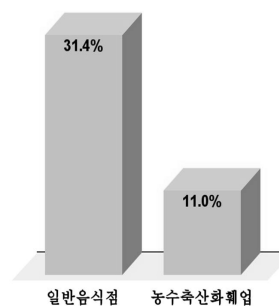
□ 기준금액 이하 상품으로의 판매 대체효과는 제한적

- 정책변화에 따른 농수축산화웨이업의 대응력이 일반음식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기준금액 이하의 중저가 상품 매출 증가”



“기준금액에 맞게 새로 출시한 상품이 사업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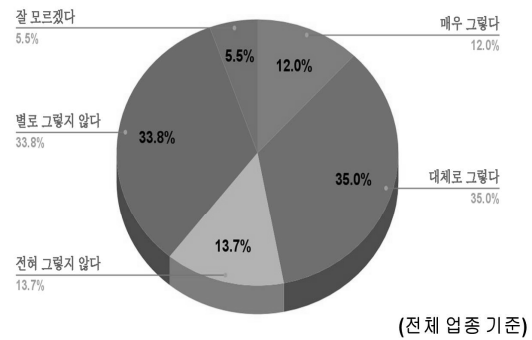


2.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 고객들의 소비행태 변화

□ 영향업종 사업체의 47%, “고객 소비행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 알뜰구매, 더치페이, 가족단위 소비 증가
- 중식(60%), 한식(52%), 축산업(54%), 매출 10억원 이상(62%), 종사자 10인 이상(59%) 등에서 현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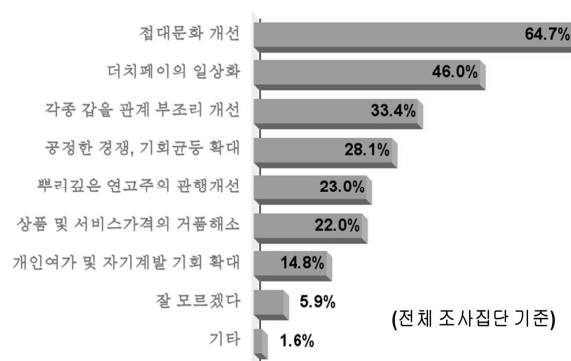
“소비행태나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 긍정적인 사회 변화

□ 접대문화 개선, 더치페이 일상화,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 등을 법 시행에 따른 변화로 인식

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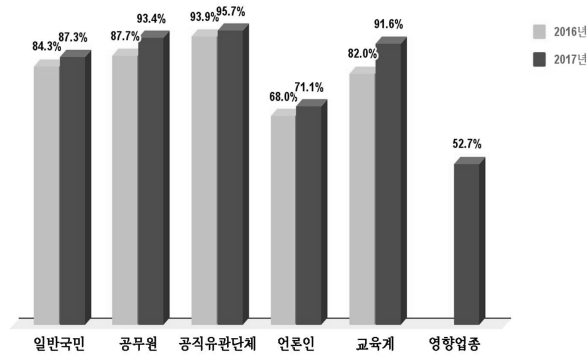


2.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 종합적 평가

□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대

- 영향업종의 긍정적 효과 인식은 52.7%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청탁금지법 시행은 종합적으로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3.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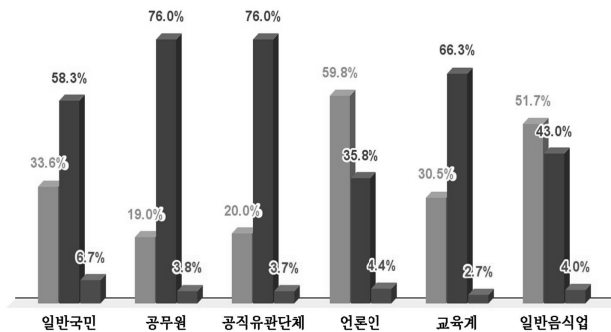
3.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 식사금액 한도(3만원)의 적정성

□ 일반국민, 공직자, 교원 등에서는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

- 반면, 언론계와 일반음식업에서는 3만원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다수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너무 낮다 ■ 적정하다 ■ 너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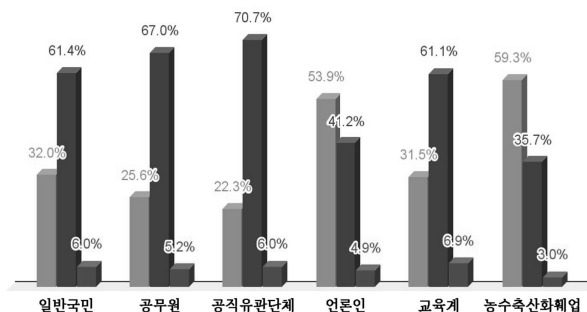
3.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 선물금액 한도(5만원)의 적정성

□ 일반국민, 공직자, 교원 등에서는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

- 반면 언론계와 농수축산화훼업에서는 5만원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다수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너무 낮다 ■ 적정하다 ■ 너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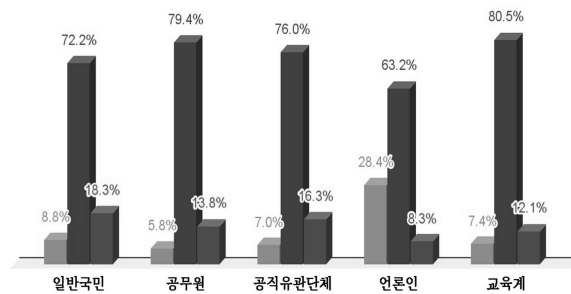
3.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 경조사비 가액기준(10만원)의 적정성

□ 모든 집단에서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

- 일반국민과 공직자의 경우 10만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10%를 상회

"경조사비 한도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너무낮다 ■ 적정하다 ■ 너무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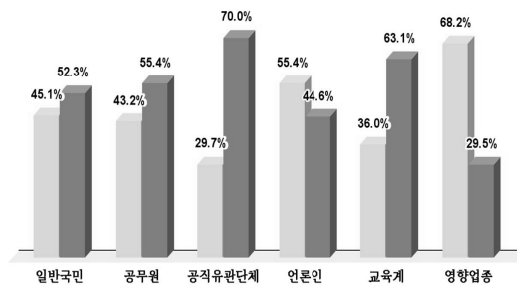
3.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 허용 여부

□ 일반국민 45% · 공무원 43%, “농축수산물에 대해 5만원 초과 선물 허용해야”

- 언론인과 영향업종은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교원들이 예외 허용에 가장 강하게 반대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준금액 초과하는 선물을 허용해야 하는가?"

■ 허용해야 한다 ■ 허용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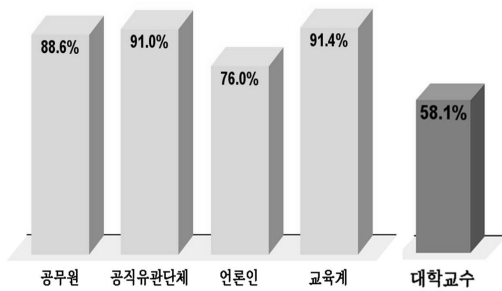


3.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 외부강의 등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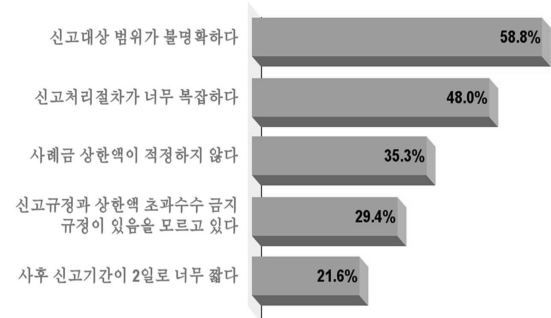
□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한도 규정은 대학교수를 제외한 직군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인식

- 규정 위반 사유로는 사례금 상한액의 적정성보다는 신고대상 범위 및 신고절차 문제를 제기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한도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다"



외부강의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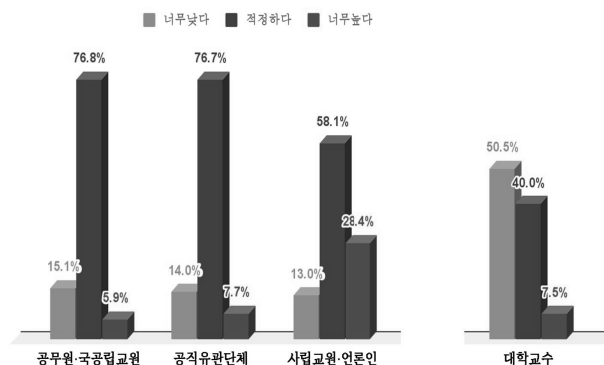


3.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 외부강의 등 관련 규정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해서도 대학교수 외에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

- 공무원/국공립교원 20~50만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40만원, 사립교원/인론인 100만원

"현행 사례금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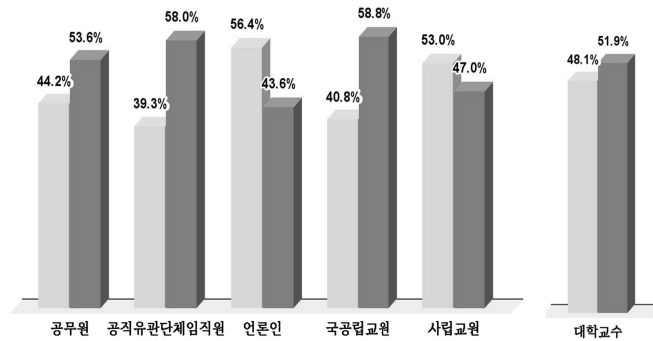
3.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 외부강의 등 관련 규정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기관유형별 차등에 대해 공공부문은 반대, 민간부문은 찬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교원 등이 반대

"기관 유형별로 상한액 차등 적용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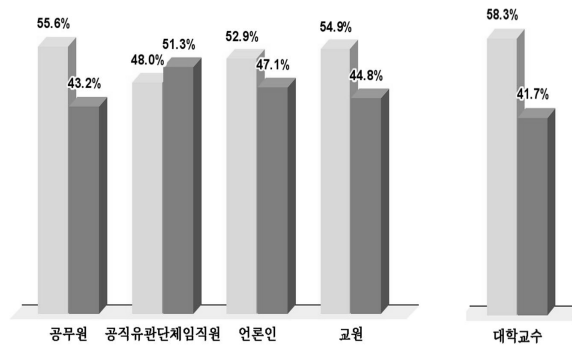
3.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 외부강의 등 관련 규정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직급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직급별로 사례금 상한액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직급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 직급에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및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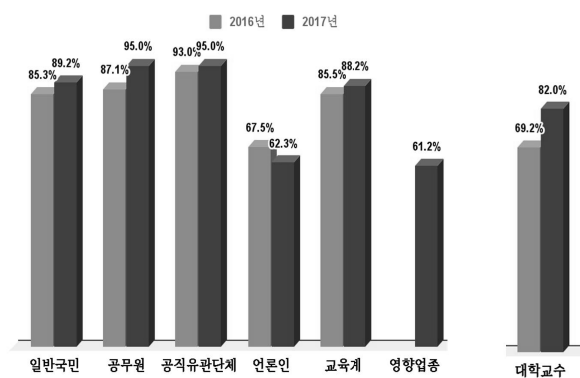
II. 조사결과

4.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및 개선방향

□ 일반국민 89% · 공직자 95%,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

- 인론인을 제외한 모든 법적용대상 직군에서 2016년 조사에 비해 찬성 증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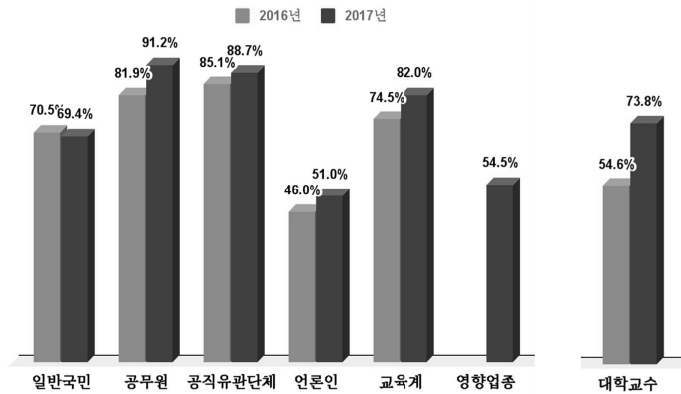


4.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및 개선방향

□ 일반국민 69% · 공직자 90%,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무난하게 정착”

- 영향업종에서는 55%가 청탁금지법이 무난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서 무난하게 정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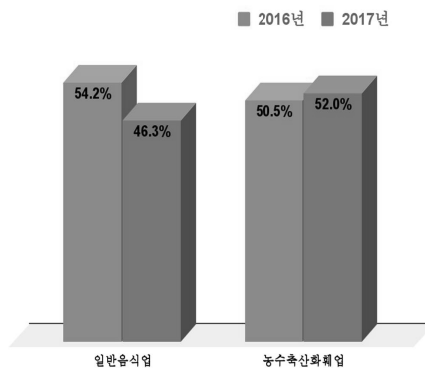


4.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및 개선방향

□ 사업체들이 인식하는 고객들의 편법사용은 일반음식업에서 감소, 농수축산화훼업에서 증가

- 일반음식업 46.3%, 농수축산화훼업 52.0%가 “편법을 사용한다”고 응답

“고객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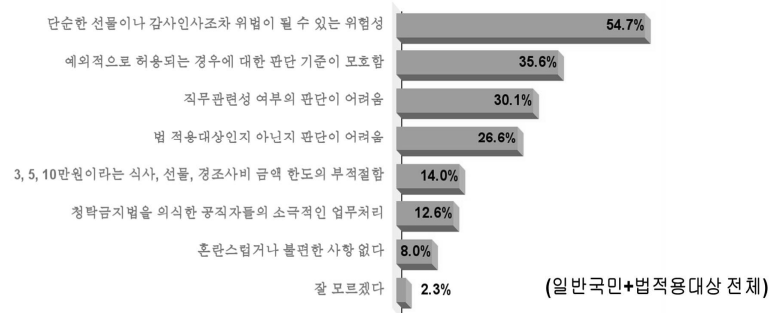


4.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및 개선방향

□ 청탁금지법의 불확정성 개념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는 인식은 여전

- ‘직무관련성’, ‘사회상규’ 등 법적 요건의 모호성 ⇨ 선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때문에 불안

"법 시행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 해석

□ 부패유발적 관행이 고착화되었던 한국사회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변화가 나타남

- 공직자에 대한 업무상 청탁, 접대와 선물 등이 감소
-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한국적 문화’로 여겼던 기존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

⇒ 청탁금지법 시행은 한국사회 변화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 해석상 혼란과 부작용 우려 있었지만,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호응도는 지속

-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응도는 법 시행 직후보다 더 상승
- 특히 공직자들의 높은 호응도는 이 법이 공직자들에게 “청탁이나 금품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제도”(김영란 전 대법관)임을 방증

1.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 해석

□ 청탁금지법 자체에 대한 의견과 세부 현안에 대한 의견 사이에 차이가 존재

- 일반국민의 89.4%, 공직자의 95.0%가 청탁금지법에 찬성
- 청탁금지법 찬성자 중 농축수산물 예외 인정에 찬성하는 비율 : 일반국민 42.2%(368명), 공직자 36.9%(278명)

일반국민 (명)	농축수산물 예외 반대	농축수산물 예외 찬성	계
청탁금지법 찬성	504	368	872
청탁금지법 반대	20	70	90
계	524	438	962

“잘 모르겠음” 제외

공직자 (명)	농축수산물 예외 반대	농축수산물 예외 찬성	계
청탁금지법 찬성	475	278	753
청탁금지법 반대	12	25	37
계	487	303	790

“잘 모르겠음” 제외

2. 향후 과제

□ 위법 또는 편법행위를 억제할 청탁금지법령 집행체계 구축

- 2018년이 되면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의 지점이 금년 “경제적 영향”에서 “법 집행의 실효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감사권 부여 검토

□ 법령상 불합리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개선

- 기관유형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차등,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도 사전신고 의무, 준법서약서 제출 의무 등에 대해 타당성 검토 필요

□ 제2의 ‘투명사회협약’으로 민간 각 분야에서 자발적 윤리강령 채택 및 실행

- 국가규제로 시작된 청탁금지법제도를 자율규제 단계로 확대 발전

토론문 1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박 범 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 소비위축 현황과 개선방안 -

박 범 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 법 시행 후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17.1)'을 마련하여 전방위적 정책지원을 실시하였으나, 농업계 어려움이 지속
 - '17년 설 기간 대형마트·백화점 등 국내산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대비 25.8% 감소
 - *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 : ('16) 1,674 → ('17) 1,242(전년대비 △25.8%)
 - (화훼) 소매(회원협회 1,200개소, '17.1~5월)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3.7% 감소*
 - * 꽃다발.꽃바구니 18.9%↓, 근조.축하화환 34.3%↓, 분화류 36.3%↓ 등
 - (한우) 도매거래량이 전년대비 5.2% 감소하였지만, 가격은 오히려 하락(9.5%↓, '16.10~'17.3, 도매)
 - (과수) 법 시행 후('17.1~4월) 사과·배 도매거래액 전년 대비 18.0% 감소
 - ▶ 소비위축이 지속될 경우 한우, 과수, 화훼 등 대규모 시설을 투자한 분야는 농가 폐업 등 어려움 가중
 - * 화훼 단지 조성 시 농가는 통상 1~2억원을 대출받으나, 매출액 감소로 이자부담조차 힘든 상황이며, 국회 인근 꽃집은 매출이 50% 감소하여 폐업한 경우도 발생(회원협회)
- 청탁금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여전히 높으나(68%, '17.6. 한국갤럽), 가액기준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여론조사(한국갤럽, '17.6) 결과 가액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52%)이 절반이 넘는 등 규정완화에 대한 여론 변화 관측
 - * 한국갤럽('17.6) : 가액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응답 52%, 적정하다는 응답 41%

농업계도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 취지에 적극 공감. 다만 농축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가 크고, 뇌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가액기준을 조정하자는 의견임.

□ 청탁금지법 상 가액기준 현실화 방안

○ 현행 3/5/10만원을 → 5/10/5+5(화환 별도)만원으로 현실화 필요

- 특히 선물 가액 조정 시 화환, 과수선물세트의 95% 이상, 임·수산물 선물세트의 75% 이상이 포함되어 농업계 어려움 최소화 기대
- 한우 등의 경우에도 10만원으로 기준을 상향조정 할 경우 소포장 선물세트 등 상품 구성을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금이 오고가는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조정하여 국민부담을 낮추는 등* 청탁금지법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
- * 경조사비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고착화되는 문제 발생
- 필요 시 선물 횟수제한, 총액제한*을 두는 것이 보다 적합
- *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선물하는 경우 횟수제한이 없어 산술적으로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60회까지 선물 가능

□ 공직사회 등에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측면에서 청탁금지법은 충분히 성과가 있었으나,

-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으로 보완이 필요
- 적정한 가격의 농산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화환 등을 부정청탁의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 오히려 수입 농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늘어나고, 기프트카드 등을 활용한 음성적 청탁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

□ 농축산물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조정과 함께 소비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음

토론문 2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최 완 현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보완방향 -

최 완 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 수산업·어촌 현황

- 수산업은 바다에서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의 수산물을 수렵·채취하거나 길러서 수확하고 가공·유통을 통해 매년 330만톤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산업임
 - 특히, 어선 건조 등 연관산업을 포함할 경우 약 104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임
 - 어업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연안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수산물은 주로 활어·선어로 유통됨에 따라 수입산 등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임
-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가식량 위기시 농림축산업과 함께 주요 식량 공급원이 되는 만큼, 국가적 보호정책이 필요함
 - 그간 WTO/FTA 체결시 마다, 최소한의 농수산 세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보호·진흥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한편, 서해의 백령도·연평도에서 울릉도와 최남단 마라도까지 전 연안에 산재한 어촌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육상면적의 4.5배에 달하는 44만km² 광활한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중요한 공간임

□ 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 영향분석 결과 (1차, '17.3월 / KMI)

- 청탁금지법 시행의 수산업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산물 생산감소액은 약 1,85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설명절 기간, '17.3월)
 - 소매단계 유통업체들의 수산물 선물판매가 급감하면서 이로 인한 수산물 생산 감소액은 연간 735억원으로 추정
 - 수산전문 음식점의 매출 감소에 따른 수산물 식재료 구입 감소로 수산물 생산 감소액은 약 1,120억원으로 추정

○ **조사 개요**(1차: '17.3월 / 2차: '17.9월말)

구분	모니터링 조사개요
수산물 선물시장 조사(대형소매업체)	- 대상 : 대형마트 3사(406개 지점), 백화점 4사(66개 지점), 수협유통, 피쉬세일(온라인) - 조사시기 : 2016년 추석, 2017년 설 및 추석 - 조사내용 : 법 시행 전후 수산물 및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실적
수산음식점 조사	- 대상 : 600개소(횃집 210, 일식 190, 참치집 55, 장어집 60, 기타해물 85) - 조사시기 : 2017년 1월, 9월(진행 중) - 조사내용 : 법 시행 전후 매출 변화, 수산물 식재료 구입 변화 등
대국민(소비자) 조사	- 대상 : 전국 1,000명(지역별·성별·연령별 층화 표본추출) - 조사시기 : 2016년 10월, 2017년 1월, 9월(진행 중) - 조사내용 : 법 시행 전후 선물 및 음식점 수요변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조사	- 대상 : 갈치, 옥돔, 전복, 굴비, 뱀장어, 넙치, 김 등 주요 영향품목 업체 - 조사시기 :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계속 - 조사내용 : 산지 출하 및 가격동향, 피해 최소화 대책 의견 수렴 등
신용카드사 실적 조사	- 대상 : 삼성, BC, 신한카드 - 조사시기 : 2017년 1월, 9월(진행 중) - 조사내용 :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업종별 카드 승인실적

□ **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향**

- 청렴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불공정한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영향은 명확하다고 사료됨
- 다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려하는 것도 필요함
 - 국민의 생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먹거리 산업인 경우 더욱 신중히 결정할 필요
- 수산업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 구조조정이나 산업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훼손과 국가 위기시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 농수산업은 특성상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저장성이 낮아 소비가 위축되는 경우 곧바로 가격이 폭락하는 점도 고려 필요
- 부정한 청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마땅함.
 -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고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 경우에 수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참고하여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농축수산물 가액기준 상향조정)

토론문 3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권 대 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권 대 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 청탁금지법 시행 후 동향

-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
 - 부정청탁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직자의 청렴·공정한 직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16.9월) 이후 소상공인은 매출·영업이익·고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에 차질
 - 시행령에서 식사가격을 3만원, 선물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화훼, 농축산물, 음식점업 등 관련 업종 소상공인 경영 위축
 - 우리부 실시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은 지속 감소 중이며, 경영악화를 감내할 특별한 대안이 없거나, 사업축소 및 폐업 등을 계획하는 소상공인이 79.3%에 달함

* 1차조사 : 전년동기 대비 월매출액 31.1%, 영업이익 35.3%, 고객수 27.9% 감소

* 2차조사 : 전년동기 대비 월매출액 25.4%, 영업이익 28.0%, 고객수 23.7% 감소
(감내방안 : 특별한 대안없음 46.6%, 사업축소 20.9%, 폐업 11.8%)

<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상공인 월매출액 추이 >



* 조사대상 : 사업체 경영 1년 이상, 7대 특·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1,020개
 조사기간 : (1차) '17.1.16~2.10 / (2차) '17. 5.24~6.9.
 조사수행기관 :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주)리서치랩

□ 우리부 정책대응 현황

- 우리부에서는 법 시행 이후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자금·컨설팅 등 지원 중
 - 정책자금 지원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전업·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 * 청탁금지법 전용자금('17.8월말) : 1,379건, 389억원 지원 (금리 2.7%, 5년, 한도 7천만)
 - 또한,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新제품 개발 및 기준 금액 (3·5·10만원) 맞춤형 메뉴 구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 *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컨설팅('17.8월말, 80억원, 5,100건)
- 향후에도 피해업종 위주로 시계열(시행 3,6,12개월 후) 조사를 실시하여 주기적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차례 조사 실시
 - * (대상) 음식업, 농축산물, 유통, 화훼 등 / (내용) 법 시행 이후 고객현황, 매출증감 등

□ 건의사항

- **현행 기준가액인 3(음식물)-5(선물)-10만원(경조사비)을 업계 현실 및 요구,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요청 (5-7-10만원)**
 - * 실태조사 결과 가액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은 약 67%이며, 희망 기준 금액은 음식물 6.3만원, 선물 11.5만원, 경조사 12.6만원
- 또한, 장기적으로 업계에서 요구하는 농축수산업 및 소상공인 음식점업에 한해 법 적용 예외 또는 일정기간 유예방안 검토 필요

토론문 4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안 광 훈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직사회의 변화바람 -

안 광 훈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

I. 서론

-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접대문화 개선, 더치페이 문화 정착 등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긍정적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 하지만 법이 갖는 모호성, 법 적용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 “3·5·10”규정의 상향 필요성 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

II. 현황 및 문제점

- 교육 현장의 경우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하게 적용
- 더욱이,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개인적인 카네이션 한송이, 캔커피 하나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아 제한
-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스승의 날 등에 별도의 행사를 마련하기 보다는 학교별로 조용히 행사를 진행하도록 유도

III.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율시책(시교육청 차원 학교 예산편성)

- 스승에 대한 감사의 표시 등이 의도치 않게 부정청탁 논란에 노출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스승의 날 취지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 스승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학생이나 학부모 대신 시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스승의 날 행사 및 학부모 상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표 1~2 참고)
 - (어울림행사 경비 지원) 스승의 날에 학교에서 카네이션 전달, 전시회, 체육한마당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카네이션 구입비 등 어울림 행사 예산 6억2,286만원
 - (스승의 날 행복밥상 지원) 스승의 날에 사제 간 특별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행복밥상 지원비 7억3,471만원을 편성·집행
 -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비) 6억8,745만원을 편성하여 1년에 두 번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부모 상담주간에 1학급당 5만원의 다과비를 지원함으로써,
 - 학부모들은 부담없이 학교를 찾을 수 있고 교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이렇게, 대구교육청에서 청탁금지법 논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 시행 이후의 첫 스승의 날 행사 등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며, 학생·학부모·교사 사이에서도 편안히 소통할 수 있었음

표 1) 2017년 대구교육청 예산편성·지원 내역(단위 : 천원)

상세 사업	2017년 예산		2016년 예산액 (b)	비교증감 c=(a-b)	비 고
	상세 내역	예산액(a)			
스승의날 기념행사	◦ 어울림행사 경비 지원	622,868	465,053	157,815	- 유치원 지원 추가 - 카네이션 구입비 포함 (1학급당 5천원)
	◦ 스승의날 행복밥상 지원	734,710	0	734,710	- 신규 -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2천원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	◦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비	687,450	0	687,450	- 신규 1학급당 5만원
합 계		2,045,028	465,053	1,579,975	

표 2) 스승의 날 관련 예산 지원 내역(단위 : 천원)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본지원금	300	500	800	1,200	1,000
추가지원금 (학급당)	10	10	10	15	10
꽃구입비	학급당 5천원				
행복밥상	급식인원(학생+교직원)당 2천원				

IV. 교직사회의 변화 체감 사례

-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교사는 물론 학생·학부모에게도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음
- 첫째, 감동 받는! 감사 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었음
 - 교사들은 금년부터 대구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통해 학부모 상담주간에도 다과를 준비하여 학부모를 초대하는 느낌으로 상담할 수 있었고, 상담을 오신 학부모님들도 “요즘엔 이런 것도 주네요?”하며 감동받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함
 - ‘행복밥상’을 통해 잔칫상 같은 밥상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떳떳하게 카네이션을 받을 수 있어서 그동안의 수고를 인정받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함
- 둘째,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음
 -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반드시 선물로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학부모들이 ‘혹시 내가 성의 표시를 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를 부정적으로 보나?’ 하는 오해를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음
 -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은 교사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교사들은 진심을 다해 학생과 학부모님을 대할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로부터 보다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셋째,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게 되었음

- 학교 구성원간 소통·공감의 대화시간을 가짐으로써 부정청탁에서 벗어나 공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음
- 학교는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소통·공감의 날을 마련해 교사와 학부모가 궁금한 점, 개선할 점, 대안 등을 터놓고 이야기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등 상호신뢰와 이해속에서 투명한 교육활동이 이루게 되었음

□ 넷째, 교사-학부모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변화시켰음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촌지 교사’, ‘부정 교사’라는 억울한 오해를 없애 당당할 수 있고, 학부모도 교사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적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음

□ 다섯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만들었음

- 학생들은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의 문화를 보고 배움
- 학교에서도 매년 학부모 연수 및 소통·공감의 날에 학부모, 교사가 함께 노력하여 청렴한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꾸준히 교육을 해오고 있음
- 교사와 학부모부터 바뀌면 아이들은 자연스레 배울 것이며, 다음 세대에서는 ‘청렴’이 당연한 문화가 될 것임

V. 결론

- ☐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사회가 삭막해지지 않을까? 제대로 정착은 될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음
- ☐ 하지만 지금은 많은 선생님들이 교직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공지와 보람도 높아지고 있음
- ☐ 이처럼 많은 기대와 우려속에서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교직 사회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지금은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함
- ☐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었던 여러 부조리들이 하나 둘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청탁금지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봄

토론문 5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기획본부장
백 승 달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백 승 달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기획본부장)

□ 초청에 대한 감사

-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 청탁금지법의 시행 1년 토론회에 초청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

-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제도개선 및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음
- 특히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일반국민·공직자간 인식차 개선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였음

□ 공직사회 구성원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반부패 활동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고객 신뢰의 근간인 반부패 활동이 중요함을 인식,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음
- 공사 자체적으로도 금품 수수 상황 대응을 위한 가상 청렴훈련, 고객 상담시 부정청탁 금지 등 청렴의무를 고지하는 청렴 미란다원칙 등을 운영하여 청렴 인식을 지속 환기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

-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청렴성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님
 -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 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 조사 대상국 176개국 중 52위 기록하였고, ' 17년에는 국정농단 사태가 반영되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우리공사는 업무특성상 접하는 외국기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청탁금지법을 소개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한국의 청렴성 수준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음

(사례 1)

- 우리공사는 업무특성 상 외국 기업, 국제상업은행, 외국정부기관, 2국제기구(OECD, Bern Union등) 및 외국 무역보험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많음.
- 특히, 외국 기업과 국제상업은행은 한국기업 앞 발주한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에 대한 우리공사의 보증을 요청하며 빈번하게 공사 방문 또는 해외에서 미팅
- 해당 미팅이 식사로 이어지는 경우 과거 관례적으로 은행 또는 기업이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사는 청탁금지법과 내규(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이유로 각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3만원 이내의 식사라도 해당건에 대한 보험인수 승인 등 업무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예외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 공사 내규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행동강령’은 청탁 금지법 보다 한발 더 나아가 업무연관성과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식사 제공을 받는 것을 금지
- 이에 따라, 우리공사 직원들은 외국기업과 국제상업은행의 업무와 관련 없는 예우적 차원의 공사 방문 및 식사의 경우에도 식사 제공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각자 부담
- 이에 대해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공사의 변화사례에 놀라워 하며,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년간의 적응 기간을 통해 현재는 공사와 거래하는 많은 외국업체와 기관들 사이에 관례로 통용되고 있음
- 또한 식사제공 거절시마다 설명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외국기업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한국의 공직사회에 대해 높게 평가

(사례 2)

- 단순히 식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공사는 주요 무역보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청렴 정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중장기수출보험 지원 대상에는 개발도상국의 자원개발이나 SOC에 대한 수출이 많음
-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이다 보니 수주 과정이나,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유인이 존재
- 이에따라, 우리공사는 개발도상국 지원시 해당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공여되면 사후에라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확인서(뇌물비공여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음
- 청탁금지법을 통한 우리공사 직원의 청렴도 제고 뿐만이 아니라 동 확인서 징구를 통해 청렴정신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OECD 뇌물비공여확인서

외국의 프로젝트 수주 또는 금융 제공시 해당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공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추후 뇌물연루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보험계약 철회, 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사례 3)

-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공사를 비롯한, 국제상업은행, 국제변호사 등이 현지실사를 실시하거나, 준공식, 서명식 등 현지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
-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별다른 기준 없이 프로젝트 사업주가 항공편과 숙박을 제공

- 그러나 동 법 시행이후, 법상 허용되는 기준(제8조 제3항 제6호*)을 우리공사 직원에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기념품

- 이에 따라, 준공식 및 서명식 등 공식적인 행사에는 사업주가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편과 숙박을 제공하고,
- 일률적이지 않거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공사는 항공편과 숙박을 자기 비용으로 부담
- 동 기준은 청탁금지법에 의거 우리공사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공사가 적용받는 기준이 프로젝트의 표준으로 기타 외국기관들에게도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
- 이로 인해, 프로젝트 전체 비용이 일부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청탁금지법을 해외에 홍보하고 청렴 정책을 해외까지 확산하는 효과 발생
- 사업주도 비용 감소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감사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젝트 참여자들도 한국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토론문 6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한국화웨이협회 부회장
임 연 홍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과제 토론회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화훼산업 붕괴 직전 -

임 연 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 화훼는 뇌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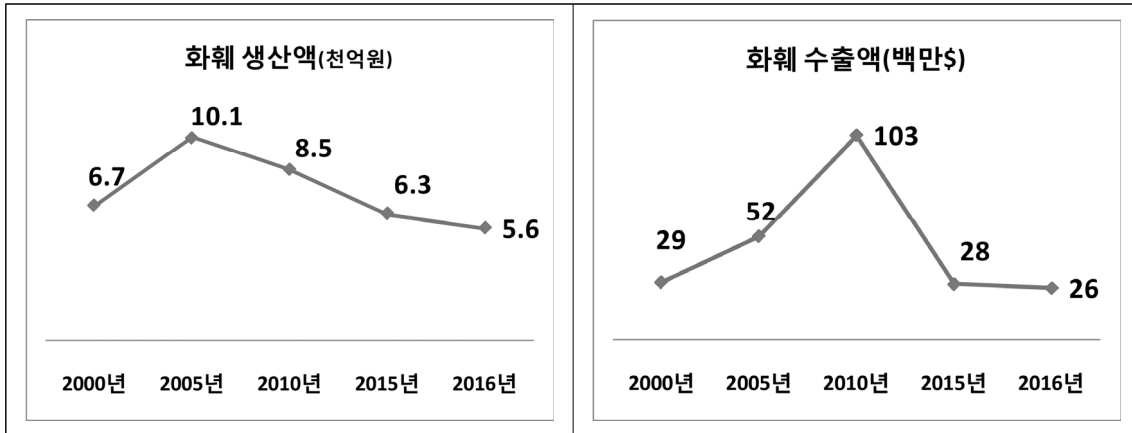
뇌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직위의 사람을 매수 사사로운 일에 이용을 위하여 넘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 넘지시는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라는 의미다. 산업사회 이후 꽃의 이동은 공공의 장소에서 행사의 취지에 맞게 전달의 의도와 보내는 사람의 단체명, 직함, 이름을 명확하게 예쁜 리본에 밝힌 후 축하 또는 애도를 함께해오면서 국민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였다. 단언컨대 화훼는 뇌물이 아니다.

■ 화훼계의 기본입장

이 자리는 우리 화훼업계로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의 성과를 논해야 할 입장은 아니다. 화훼인들의 작금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다. 우리 화훼업계는 공직자 뇌물 및 향응수수 등을 근절해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청렴국가를 건설한다는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때문에 화훼산업 기반이 붕괴 직전이다. 화훼농가와 유통인 등 수많은 화훼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세한 화훼업계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를 받아야한다. 화훼시장 회복을 희망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탁금지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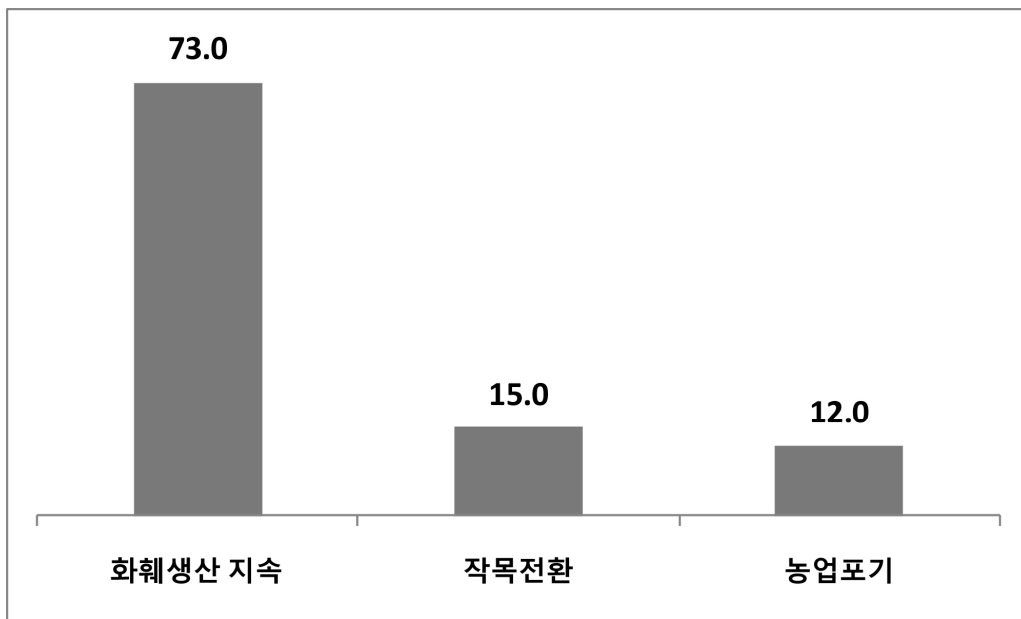
■ 우리 화훼산업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화훼산업은 시장개방, 경기침체 등의 대내외 여건 변화로 한 때 1조원을 돌파한 화훼 생산액은 6천억원 대로 줄었고, 1억불에 달했던 수출액은 3천억원 대로 급감하여 크게 위축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엮힌 데 덮친 격으로 화훼가 직격탄을 맞았다. 1년 사이에 생산액은 7백억원 가량 줄었고, 수출액은 2백만불 가량이 줄었다.



한편, 금년 3월 농식품부가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화훼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화훼 농가의 27%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꽃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 화훼 증가로 화훼 시장이 악화되고 있어 재배작목을 전환(15.0%)하거나 아예 농업을 포기(12.0%)하겠다고 응답했다.

<화훼 재배 지속 의향>



실제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도에 491호의 화훼농가가 화훼재배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업계는 농가 수취가격 하락과 화원 매출 감소로 작목전환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화환상품 주문이 줄면서 배송업에 종사자 80%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화훼산업 기반붕괴는 자명하다. 결국 국내 화훼시장은 값싼 외국산 화훼에 의해 시장이 잠식당하게 되어 국민들은 고가에 꽃을 사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 화훼시장은 매우 심각하다.

화훼시장은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되어가나 화훼시장은 얼어붙어 요지부동이다. 희망 섞인 소식은 없고 실의에 빠진 화훼계 원성만 자자하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난, 화환 등 선물용과 경조사용 화훼류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16.9.28.부터 ’17.8.26.까지 전년 동기 대비 aT화훼 공판장(도매시장)의 화훼류 전체 거래물량은 5.2%, 거래금액은 6.1% 감소하였다. 특히 승진, 전보 시 주로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난(蘭)류는 거래금액은 25.3%, 거래물량은 12.8% 감소하여 가장 피해가 컸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도매시장 거래금액은 30% 가까이 급락하였다. 수치만 보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화훼농가들이 재배를 포기하여 화훼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내산 화훼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업자들이 값싼 수입화훼를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 화훼시장은 수입화훼가 잠식한다.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붕괴로 직결된다.

< 도매시장 거래동향 >

(천속·천분, 백만원)

	‘16.9.28.~’17.8.25.(‘15.9.30.~’16.8.26.)					
	금 액		물 량		비 율(%)	
	‘16(A)	‘17(B)	‘16(C)	‘17(D)	금액(B/A)	물량(D/C)
계	99,929	93,792	32,433	30,752	6.1 ↓	5.2 ↓
절 화 류	54,087	54,902	17,555	16,800	1.5 ↑	4.3 ↓
분 화 류	45,842	38,890	14,878	13,952	15.2 ↓	6.2 ↓
난 류	26,078	19,491	4,601	4,013	25.3 ↓	12.8 ↓
관엽류	19,764	19,399	10,277	9,939	1.8 ↓	3.3 ↓

일선 화원(꽃집)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화원협회(1200개)가 제공한 화훼상품 판매동향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꽃바구니, 화환 등 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5%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꽃바구니는 20.9%, 화환은 24.8%, 분화류는 32.3%가 감소하였다.

특히 (사)한국화원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감소로 협회 회원 폐업율은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원(꽃집)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 소매시장 판매동향 >

(단위 : 백만원)

	‘15.10.1.~’16.6.30. (A)	‘16.10.1.~’17.6.30. (B)	B/A(%)
합 계	2,556.3	1,853.6	27.5 ↓
꽃다발·꽃바구니	236.4	187.0	20.9 ↓
근조·축화화환	1,270.8	955.9	24.8 ↓
분화류(난류, 관엽류)	1,049.1	710.7	32.3 ↓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화훼 선물, 경조화환 수요 감소로 화훼 생산액은 914~1,067억원, 소매 매출은 1,407~1,644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 우리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뇌물로 인식하게 만드는 가혹한 현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손 편지나 카네이션 한 송이나 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일 손 편지를 쓴 학생이 나중에 문학가로서 대성을 한다면 고등학교 시절 쓴 편지가 큰 값어치가 있을 텐데 그럼 그것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냐”며, 법 취지는 좋지만 이런 과도한 부분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도 ”스승의 날이라는 공개적인 날조차 꽃 한 송이 못 주는 것은 가혹하다. 고마우신 선생님께 1년 내 내도 아닌 단 하루, 그동안의 고마움을 꽃 한 송이로 표시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는 줄 수 있도록 하자.

■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청문에서 추석 전까지 가액을 조정한다고 약속하였다. 가액조정도 쉽지 않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훼업계는 단순히 수수허용 가액 상향만으로는 화훼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화훼를 포함한 농축산물이 수수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농축산물을 제외하여야 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청와대,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도 법의 형평성, 균형성만 내세우지 말고 어려운 화훼농가의 입장을 생각하여 화훼를 포함하여 과감히 수수금지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문 7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 정 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

임 정 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들어가며

- ▶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사회 투명화 등에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
- ▶ 시장경제 및 농수축산업과 음식업 등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내산 농수축산물 등을 제외하면 자연스럽게 법 취지는 살리면서 시장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필요성

- ▶ FTA 등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친환경농어업 육성정책이 요망되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내산 고품질 농·수·축산물 유통 제한 및 저렴한 수입 농·수·축산물 대체로 국내 농수축산업 피해 심각
- ▶ 또한 동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 기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농어업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므로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피해 최소화 및 내수경제 활성화

□ 목표

- ▶ (추석전)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상한액 조정
<3·5·10 ⇒ 10·10·5만원>
 - * 선물가액 기준 : 5만원 ⇒ 10만원
 - * 식사비 기준 : 3만원 ⇒ 10만원
 - * 경조사비 기준 : 10만원 ⇒ 5만원(공무원 행동강령과 동일)
- ▶ (추석후)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의 범위에 국내산 농수축산물 제외

□ 방법

▶ 청탁금지법 · 시행령 개정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상향 : 동법시행령제17조 개정→<가액 상향>

* 농수축산물의 수수금지 금품등 범위 제외 : 동법제8조 개정→<신설>

▶ 대국민 여론조사

* 저렴한 수입 농·수·축산물 대체로 국내 농수축산업 피해 심각성 대책

□ 나가며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농어민과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

▶ 청탁금지법 위반 감시와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

*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공기업 직원이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유일

▶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계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

토론문 8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장 기 선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한우업계의 현실 -

장 기 선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청탁금지법의 기본입장

청탁금지법에 대한 한우농가를 비롯한 농축수산인들의 기본입장은 청렴한 나라를 만든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옥의 티를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본디 부정청탁 방지를 통해 국가 신뢰도 향상을 이루는 것인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없어야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개정해 피해를 줄여보자는 입장입니다.

국내 농축수산물의 특성과 이해 절실

농축수산업은 그동안 UR, WTO, FTA 등에서 항상 국익을 위하여 희생 당해왔습니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0%대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선진국 대열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는 농축산업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고히 하여 국력을 공고히 합니다. 우리나라도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가치 때문에 헌법 제119조 2항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 제123조 1항(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제123조 4항(수급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으로 가격안정 도모하여 농어민 이익을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의 이해

한우농가는 FTA 이전에 16만 농가에서 10만 농가로 줄어들었고, 최근 2011년부터 작년 4월까지 소한마리를 30개월동안 키워 100만원 정도 손해 보다가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이제 가격이 회복되어 이익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만 한우농가가 평균 26두 정도 키우고 있어 연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의 가격 부담은 있지만 아직도 농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FTA 이후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가의 소득이 아직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 시행 후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청탁금지법이 공무원, 교사, 기자 등 고위직·권력자를 대상으로 부정 부패를 없애고자 하는 법이지만 법 적용 대상 기준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 대상 공직자 외에도 일반사회 규범화로 전체 국민의 인식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도 금액상향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앞선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없이 장기화 될 경우 사회불안 현상이 초래되어 연관 산업 침체 및 장기적인 경기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여론조사 결과]

(중앙일보 : <개정> 74% <현행유지> 26%, 한국경제 : <개정> 54% <현행유지> 31%)

한우산업 발전 정책과 모순

그동안 정부는 수입개방과 값싼 수입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한우 고급화 정책을 장려해왔습니다. 농민들은 시설투자와 개량을 통해 한우의 품질 향상에 주력해 왔으며, 국민들에게는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은 뛰어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선물과 식사 가격에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그동안 펼친 정책에 모순되어 고급화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며, 한우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금품가액 기준이 한우에 미치는 영향

- 농가 수익 감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는 공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6년 10월~'17년 3월 한우 도매가격은 9.5% 하락했습니다. 한우가격 약세의 원인으로는 공급 감소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요 감소폭이 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격이 저렴한 외국 쇠고기의 수입량은 동년 대비 21.4% 증가해 현 청탁금지법은 '수입농축산물 소비촉진법'으로 전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전후 쇠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구분	1~9월			10월~익년 3월		
	2015년	2016년	증감률 (%)	2016년	2017년	증감률 (%)
한우 도축마릿수(두)	692,554	554,357	-20.0	392,582	372,008	-5.2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원/kg)	15,944	18,839	18.2	18,265	16,535	-9.5
쇠고기 수입량(톤)	219,898	259,541	18.0	155,102	188,284	21.4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의 표는 평균 수치의 자료이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겪은 바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 한우의 경락가격은 1kg당 19,300원이었으나 시행 후 최저 14,700원으로 하락해 1kg당 4,600원이 하락했습니다. 1kg당 4,600원의 하락분을 1마리로 계산하게 되면 마리당 200만원가량의 손실을 농가는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 선물가액 기준으로 인한 피해

한우는 평월 소비가 78천두지만 명절에는 125천두까지 늘어 평월 대비 1.6배까지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한우선물세트의 99%가 5만원 이상이며, 93%가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가액 5만원을 맞추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비성향 변화로 인해 법 시행후 첫 명절인 2017년도 설 선물세트 판매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설 선물세트 판매율을 적용해 연간 생산액 감소분을 추정한 결과 한우는 2,286억원, 과일은 1,074억원, 화훼는 390~438억원의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품목별 농업생산액 감소분 추정치]

	2015년 생산액 (억원, A)	선물용 비중 (%, B)	선물세트 판매감소율 (%, C)	생산액 감소분 (D = A X B X C)
한우	44,409	21.1	-24.4	-2,286
과일	36,869	9.4	-31.0	-1,074
화훼	6,298	-6.20		-390
		-6.95		-438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2.28 보고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한우고기 영향 조사를 별도로 진행한 결과 올해 설에 거래처 등 지인에게 한우고기를 선물할 의향이 있는 가구소비자 비율은 8.9% 낮았고, 의향이 없는 소비자 비율은 74.6%에 달해 청탁 금지법이 한우고기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품목별·가격대별 설 선물세트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쇠고기		농축산 계		식품 계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2017년	1.2	98.8	26.1	73.9	60.4	39.6
2016년	7.5	92.5	23.2	76.8	54.2	45.8
2015년	2.6	97.4	19.1	80.9	50.3	49.7

자료: 이용선 외(2017)

10만원 이상이 93%가 넘는 한우선물세트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우의 경우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고급화 정책을 펼쳐 왔지만 한우와 수입육간의 선물세트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남에 따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선물 기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입육을 선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우 소비 위축은 물론 수입육 소비촉진법으로 전략하게 되었습니다.

- 식사가액 기준으로 인한 피해

한우로 식사할 경우 기준가액에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한우 전문점 등을 포함한 일반음식점도 법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법 시행 후 일반음식점업 생산은 전년 대비 4.9% 감소로 추정되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한우구이, 한정식, 수산전문점(해산물, 일식)의 매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끼쳐 2016년 4/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3.1%(30,382명)의 일자리를 앗아갔습니다.

[일반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

구분		1~3분기	4분기
2016년		91.9	91.7
2015년		93.0	96.4
2014년		94.9	98.7
증감률	2016/15	-1.2	-4.9
	2016/14	-2.0	-2.3

주 : 분기별 수치는 월 평균.

자료 : 통계청

한우농가가 바라는 청탁금지법이란

- 기본입장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축산업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및 시행령 조정’을 통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28개 생산자 단체 연합은 지난 8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추석 전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 개정 및 시행령(금액) 조정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8호의 ‘사회상규’에 대한 법 개정부터 해야 합니다. 1차산업 생산물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금액만 일부 상향할 경우 수입산만 더욱 유리해지는 역차별이 초래되어 자칫 국내산 농축산물 보다 수입 농축산물 소비촉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우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구성이 어려워 수입 쇠고기 소비촉진법으로 전락될 우려가 큼니다.

[생산, 수입에 따른 자급률 추이]

단위 : 천 톤

구분	2010	2013	2016	전망	
				2017	2021
생 산	186	260	219	227	229
수 입	245	257	362	364	397
자급률(%)	43.2	50.1	37.7	38.4	36.6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2017농업전망), 농림부(농림축산분야 주요통계 2016)

- 금액조정(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금액조정으로는 수입산만 소비장려가 되므로 현실적인 대안이 되려면 국내산 농축수산물도 기준을 금액이나 중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중량 3Kg로 설정하게 되면 모든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수입산의 특성이 고려되며, 수입 농축산물보다 가격이 높은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장벽이 해소됩니다.

-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한우협회의 노력

그동안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이 한우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될 것임을 우려해 힘든 투쟁을 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현재 100명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권익위 토론회 및 간담회(2015.7.28 / 2016.5.24 / 2017.8.3), 김영란법 개정 국회 토론회(2015.8.10 / 2016.6.15)를 비롯해 수많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농민궐기대회(2016.7.21)를 개최해 2만여명 가량이 운집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8월 9일에는 한우협회를 비롯한 29개 생산자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추석 전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어제에도 국회의원사당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 잠정 중단과 개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에 참여해 한우농가의 피해를 알리며, 법 개정의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당시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의 시급성을 언급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면 수입 농축수산물 촉진법으로 왜곡되었고, 국내법으로 인해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만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추석 이전이라도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산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토론문 9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나 명 주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 -

나 명 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개정안 2개가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정안에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벌 기준과 대상을 완화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낸 개정안에 의하면 ① 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 ② 음식물과 선물 가액을 모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리자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금품등의’에서 농축산물과 전통주를 빼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분은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청탁 금지법 이전에는 우리 경제가 선물과 접대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 되었다는 말인가!!

집단지성의 힘,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지난 19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학교에 과일간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비만을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급식과 별도로 과일간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 등 돌봄 교실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아이들 식습관 개선”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역농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차원 검토”를 주문했다고 하니 곧 현실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농가소득 감소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접대문화를 다시 활성화시키자는 논리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국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5년 세계 16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인식지 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6점을 받아 43위에 머물렀다. OECD 평균

69.9에 한참 모자라는 점수다. OECD 34국 가운데는 27위에 그쳤다. 이 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절대부패'에서 겨우 벗어났으나 여전히 공공 분야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이다. 부패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1년밖에 시행해보지 못한 '청탁 금지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가 나서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탁 금지법이 안착되어야 하는 이유와 좀 더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 중심으로 고민을 나눠보고자 한다.

부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304명의 소중한 국민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 부패 네트워크 때문이라는 증거는 여기저기 넘쳐난다.

① 해운조합 인천지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문서더미에서 인천지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이 발견되었다. 대상은 모두 선박 운항에 대한 감시와 감독기관의 공직자들이었다. 청해진해운 역시 인천항만청 직원들에게 4000여만 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고 이렇게 형성된 인맥을 활용해 일본에서 낚은 여객선을 수입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고도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② 위 인맥은 해수부 관료들이 해수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자리를 바꿔 앉으면서 로비의 창구역할을 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소위 관피아의 힘을 발휘한 것이다. 해수부 산하 11개 기관장이 해수부 출신으로 밝혀졌다.

③ 청해진해운 소유주인 세모그룹 출신인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이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는 역할을 했다고 추정된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직무수행을 한 경우이다.

관피아가 서로 봐 주기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박운항을 허가하는 단계부터 구조하던 순간까지 그 모든 단계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다. 부패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전형적인 참사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부패와 적폐청산을 위해 온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엘리트카르텔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영원한 부패국가다.

미국 콜게이트대학 정치학과 마이클 존스톤 교수는 국가의 부패유형을 독재형, 엘리트 카르텔형, 족벌형, 시장로비형으로 나누는데 한국은 엘리트카르텔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았다. 얼마 전 뉴스를 기억해보면 정확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든다. 삼성의 장충기 전략기획실 사장에게 사회지도층이라 일컬을 수 있는 꽤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문자로 인사 청탁을 한 사건이다. 자식의 일자리를 부탁한 언론인, 자신의 사외이사 자리를 청탁하는 언론인 출신 대학교수, 광고수주 운운하며 삼성에게 불리한 기사는 쓰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는 언론인 등등. 문자를 보는 순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사 간부, 교수 등은 우리 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엘리트 집단이다. 정치인, 언론인, 기업간부, 고위관료 같은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엘리트카르텔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학연, 지연 등으로 인맥을 형성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을 만들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 전형을 우리 언론인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카르텔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운 부패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

2012년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 30세 이하 청소년과 31세 이상 성인 각 1천 명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대면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부패 인식이 놀랍게도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좋게 나왔다. 예를 들면, "부정입학이나 취업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31세 이상 성인은 48.8%가 '받아들이겠다.'로 답한 반면, 30세 이하 청소년은 성인보다 5%p 이상이 높은 54%가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한국사회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거짓말이나 불법을 통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것도 31세 이상 성인이 31%인 반면, 30세 이하 청소년은 약 10%p가 높은 40.1%였다. 한국사회에서는 "부패한 사람이 빨리 출세한다"고 답한 청소년도 절반이 넘는 52%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청렴의식이 기성세대보다 낮다. 이 통계를 접한 순간 TV 광고가 생각났다. ‘부자 아빠를 꿈꾼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의 품격을 말한다.’ 이런 돈 중심의 가치를 버젓이 사회가 추구할 목표인양 광고하는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신념은 당연히 부자를 꿈꾸는 것일 게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사회에서는 탈세한 억만장자가 성공신화로 청소년들에게조차 당연히 받아들여진다. 또한 청문회 때마다 드러나는 사회 지도층의 위법 편법 행위는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저렇게 법을 어겼으니 저 자리까지 올라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위험하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그들이 부패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면 우리사회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 부패인식지수가 1점 높아지면 1인당 GDP가 연평균 0.029퍼센트 상승한다. 반면 이 점수가 낮아질수록 투자는 줄어들고 큰 재난이 일어날 확률은 높아진다. 우리의 부패인식점수가 OECD평균에서 한참 벗어난 결과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걸림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청소년의 청렴의식,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얼마 전 부안여고 성범죄 교사 사건이 있었다. 교사는 성 비위 뿐만 아니라 성적을 미끼삼아 수시로 학생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게 가게에 결재를 해 놓으면 찾아가겠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아이들 상대로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교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청렴해야한다.’ 라고 말하기가 궁색해진다.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법 앞에 동등하게 처벌받는 통쾌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금품수수를 포함한 4대 비위를 저지르는 교사에게는 교육부의 방침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가 감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다시 학교로 복귀한다. 교육부의 무관용 원칙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나마 국정농단과 부패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범죄와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사회 어른들의 역할이다. 적극적으로 예방, 조사, 기소, 처벌하여 청소년에게 귀감이 된다면 청소년이 살아갈 세상은 그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정직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학부모활동, 공익적 관점을 견지하자.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상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정직하고 청렴한 어른들의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다. 학교마저도 100% 청렴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전히 금품수수(촌지) 문화가 남아 있다. 간간히 언론에 보도되는 금품을 받고 성적조작에 가담하는 교사도 존재한다. 사실 학부모들이 오랜 세월동안 가슴앓이를 하게 한 주범이 이 촌지문화였다. 맘 편히 학교에 상담하러 가는 것을 방해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견고한 장벽역할을 했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교육관을 공유하고 아이의 올곧은 성장을 돕는 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금품이 오가는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때는 열악한 학교재정을 이유로 교원의 복지후생비도 학부모가 납부해야 했다. 과도한 회비 징수로 문제가 되면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학부모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가며 새롭게 조직되었다. 이제는 시도교육청별로 학부모회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가 사적으로 후원금 내는 문화도 없애고 필요한 예산은 학교재정에서 부담하게 하고 있다. 내 아이만을 위한 사적활동이 아니라 학교교육발전 즉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앞장 선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올곧게 자랄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아쉬운 점

첫째,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안에는 있었으나 국회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통째로 빠졌다고 한다. 얼마 전, 모 국회의원이 자신의 자녀를 보좌관으로 특채채용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렇듯 공공기관 임원이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를

주거나 공무원이 자기 부모의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등의 사익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둘째,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

셋째, 금품수수 금지 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당사자와 배우자로 한정 한 점. 부모와 자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부정청탁을 14개 유형으로 특정하여 범위를 축소시킨 점

다섯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하여 선출직 공무원이 브로커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점. 등 원안에서 삭제된 부분은 다시 살려야 한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을’이 더 이상 ‘갑’에게 선물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직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는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접대와 향응을 사업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 모습을 어깨너머로 지켜본 청소년들이 ‘법을 어겨서라도 출세하겠다.’라는 가치관을 형성한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청소년이 사회를 대하는 자세는 온전히 어른들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 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로부터 희망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제 겨우 안착되어가고 있는 법을 흔들며 다시 예전대로 관행적인 접대문화를 이어가자는 것은 나라를 다시 부패국가로 몰아넣자고 하는 말이나 매한가지다. 이런 법까지 등장시킨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지키자. 라고 다짐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보인다.

토론문 10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송 준 호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송 준 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끈 법은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법이 제정되기 수년 전부터, 법이 통과된 후 시행일까지, 그리고 법이 시행되고 만 1년이 지나는 지금도 이 법은 우리의 일상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사회를 발목 잡는 부정부패의 토양을 갈아엎는 연장도구이기에 무척 낯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청탁금지법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 당사자의 생존 위협 우려 주장에 따른 거센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탁금지법은 시행한지 불과 1년 만에 안착을 해가고 있다. 두 가지 점에서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는 법 5조에서 열거한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심코 건네던 부정청탁을 이제는 청탁하는 사람이나 청탁받는 사람이나 무척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부정청탁이 박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위에서 상당수 보이지 않는다. 둘째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역시 눈에 띄이지 않는다. 가령 연구실을 찾는 학생의 손에 캔 커피, 음료박스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어디 교수연구실 뿐이겠는가?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직자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청탁금지법의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대담하게 청탁하고 돈으로 매수하려는 행태를 내보이기에는 쉽지 않다. 공직자 자신이 법률과 규정, 소신과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직자들로 가득한 공공기관은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청탁금지법 1년을 맞으면서도 개운하지 않은 것은 선물의 생산자인 농·수·축·임산물 업계의 외침은 아직도 이어짐에 있다. 아무리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1차 산업은 우리의 신토불이가 아닌가? 이들 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선물 가격의 제한 삭제 또는 상향 조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업계 경기가 진작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우리는 이제 보다 냉철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법은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과 손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득실을 가려 판단하여야 한다. 마치 FTA 협정 체결과도 같다. 우리 신체에 어느 장기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도 상통한다.

선택1 : 농·수·축·임산물 업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때에 업계의 이익은 그대로 현행과 같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고가의 선물도 공직자 사이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에 오갈 것이다. 이런 관행으로 인한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 행위가 있다면 불가피성을 감안해 눈을 감아 주어야 한다.

선택2 :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경우 관련 업계의 손실은 있다. 손실의 정도는 지난 1년간 두 차례의 명절에서 경험하였다. 다만, 고가의 선물은 위축되었지만 오히려 소액의 선물은 증가하였다는 소식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선택지를 택해야 한다. 하나의 선택지를 택한 후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하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선택지는 2이다. 그리고 관련 업계의 위축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나아가 관련 업계의 활성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은 업계 스스로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도 나서야 한다.

먼저 업계에서는 국민들에게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에서만 금지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름 홍보를 하고 있을 뿐 관련 업계는 물론 다른 중앙 및 지방 행정 부처들의 홍보는 눈에 띄지를 않는다. 또 박리다매라는 말처럼 그 동안 고액 상품의 포장 단위를 작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부담 없이 구매하도록 하면 매출총액은 늘 수도 있다.

관련 업계의 정부 부처는 업계의 주장을 공중에 전달만 할 것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갖는 대의를 생각하여 업계에 주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업계의 매출 축진을 할 수 있는 방책도 제시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들면 이 법에서 말하는 선물은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에 주고받는 것에 한정함에도 공직자에게는 무조건 선물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괴담처럼 있다. 관련 업계의 정부 부처는 왜 이런 괴담을 방치하는가?

더 나아가 정부 부처에 이런 제안을 한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풍양속이다.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은 아니다. 선진 사회는 현금이 오가지 않는다. 개인의 기념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에 선물로 축하한다. 심지어 결혼식에도. 우리 사회도 현금을 중시하기보다는 선물을 애호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홍보하면 좋겠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착을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 사회가 청렴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청탁금지법이 무용하다는 얘기도 하고, 강원랜드 인사 비리로 청탁금지법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사건들은 청탁금지법이 공포되기 이전의 사건들이다. 청탁금지법이 더 일찍 시행되었다면 이러한 부패 사건들은 발생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우리 사회의 청탁과 접대 관행에 다소 익숙하지 않은 청탁금지법이지만 앞으로 이 법은 우리 사회를 청렴의 토양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할 것임에 확신한다. 따라서 이 법은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하나,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삽입이다. 원래 이 법의 초안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논의의 시간상 제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이제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별도 입법도 한 방안이기는 하다.

둘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말고, 금품을 주지 말라는 법이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처벌을 한다. 그런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도 법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법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적용 대상이다. 매뉴얼을 보면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신분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 국가기관은 계약직을 포함하지만, 공직유관단체는 모두 포함한다. 기관의 성격마다 달리할 것이 아니라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신분과 관계없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하나 들면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 및 환경노동 종사자, 대학 등에서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이다.

둘째, 외부강의 신고의 경우 직무 관련이라 함은 사실상 교육신청 기관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직무를 의미하는 취지이었음에도 무조건 공직자의 외부 강의(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의 대외 업무 지원 및 봉사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상호 원활한 융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셋째,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서 친족이 제공하는 경우 친족을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라 하였는데, 요즈음 시대에 혈족과 인척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4촌을 넘어가면 사실상 누구지도 모르고 교류도 없다. 4촌 이내로 단순화 통일시킨다.

넷째,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인정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법의 적용을 안 받는데 이 점도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의 일탈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볼 때에 사실혼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는 제어하여야 한다.

다섯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제3자와 구분하여 본인 자신의 부정 청탁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경우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소위 학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끝으로 청탁금지법이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밑알이기를 기대한다. 단지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시시비비 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이 법에 공감하고 법을 준수하면 좋겠다. 그 결과는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한 마디로 나라다운 나라를,

토론문 11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장 유 식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회 -

장 유 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총평]

- 세월호에 의해 살아난 청탁금지법, 2015. 3. 27. 제정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 9. 28. 시행
- 시행 1년을 평가하면,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입법취지와 구체내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충분치 않다고 평가됨
- 법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지지여론은 90%에 달하지만, 적용대상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음
- 향후 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도를 안착시키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작업을 통해 법의 실효성과 국민신뢰를 얻어야

[몇 가지 쟁점]

○ 사립학교와 언론

- 당초 공직부패만을 대상으로 논의되던 청탁금지법이 사립학교와 언론까지 확대된 것은 ‘진일보’와 동시에 민간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법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도 존재함(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이 됨)
-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특히 학부모들의 지지는 확고함
- 언론계에서도 취재관행의 변화를 가져온 점은 긍정적인 평가이나, 취재원과의 소통기회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 민간영역 중 공적기능이 강한 '금융 및 보험', '건설', '변호사'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됨

○ 3.5.10. 규정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생계 위협을 주장하는 농축산업자와 영세상인들을 중심으로 시행령 등의 개정(현실화)을 주장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적이고, 시민단체도 반대취지의 성명서 발표했으나, 경제활성화와 농민표심을 의식한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법령개정을 모색
- 법 시행 후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제45조)에서 '개정검토'를 2018년 12월 31일경 하기로 한 이상, 국민정서상 개정 논의가 쉽지 않음
- 선불리 법령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예를 들어 선물의 경우, 적용대상자가 5만원만 넘지 않으면 뭐든지 받아도 문제없다는 오해 / 적용대상자는 5만원을 넘으면 누구로부터도 받으면 안된다는 오해)를 풀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모색해야

○ 수사권 남용우려

- 법 제정 당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 바 있음(금품수수보다는 '부정청탁'의 해석과 관련)
- 최근 검찰에 의하면, 2017년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법 위반으로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함(3명 구속), 71명은 수사 중, 25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
- 대부분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평가는 이르다고 판단됨

[과제]

○ 이해충돌규정

-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공백은 이해충돌규정이 빠진 것
- 백지신탁, 퇴직 후 취업제한 등 일부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이해충돌규정의 입법을 고민해야(별도입법 또는 개정입법)

○ 조사권 등

- 청탁금지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부여(권익위는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재조사 요구권)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 부여가 필요, 부패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권 부여도 검토해야
- 아울러 권익위를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으로 재편해야 함(행정심판 기능, 고충처리 기능과의 분리)

토론문 12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
이 범 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청탁금지법 지켜야 할 것과 바꾸어야 할 것 -

이 범 준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

김영란·이범준,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2017 공동저자

1. 갑 중의 갑 기자들의 취재환경도 변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갑 중의 갑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자들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취재활동을 합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과 함께 언론인이 포함됐고, 기존 공무원들과 달리 사실상 처음으로 전면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워낙 많고 출입처마다도 분위기가 달라 단순화하기는 어렵지만 기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취재 활동이 적절한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원과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기자인데 대법관을 만나도, 대형 로펌 대표를 만나도 식사비가 3만원이 넘으면 더치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역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3만원이 넘으면 더치페이를 해왔고 그 자리에서 못한 경우 다음날 곧바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법조인들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들은 어느 판사나 검사들이 “전국에 법조인이 2만 5000명쯤 되는데 단순히 법조기자와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령 서울지역 변호사만 해도 1만3000명쯤인데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장 기사화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청탁금지법을 과학하게 해석하지는 않았나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례가 축적되면서 해결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사건들에서

이미 직무관련성 판례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넘지 않는 이상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해 기자인 제가 다소 혼란스러운 이유를 생각해보면, 공무원들은 뇌물죄의 적용대상인 만큼 오래 전부터 감각이 있었던 반면 기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저를 비롯한 언론인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야 처음으로 구성요건으로서의 직무관련성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2. 3·5·10 개정논의는 2018년에도 안 늦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이른바 3·5·10 가액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때 이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것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두 가지입니다. 내년에는 이 가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법이 예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당기는 것은 법의 근본 의미까지 혼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물 등 일부 업종을 청탁금지법의 예외로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청탁금지법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20만원짜리 한우세트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이상 한 번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수수가 가능하고, 회계연도마다 3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식사도 3만 원 아니라 3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외를 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저는 청탁금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인터뷰집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를 최근 펴냈습니다.

여기에서 김영란 석좌교수도 개정 논의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청탁 금지법에 보면 직무와 관련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접대는 얼마든지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면, 직무와 관련하지 않는데 한우나 굴비 같은 고가선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 그런 업종에 타격이 있는 거겠지요. 그럼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나 일부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가선물을 하는 건 모른 척해야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그건 곤란하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3. 공공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필요

청탁금지법은 다른 방향에서 보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입법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원안은 크게 세 줄기로,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였습니다. 원안의 취지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만 막아서는 안 되고 그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다른 유형을 모두 막으려 한 것입니다. 공직자가 공적인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서둘러 입법하면서 이것까지 심의하기는 너무 바쁘다고 해서 일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만 넣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민간에 대한 공무원의 부정청탁도 청탁금지법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개인의 부탁을 받아 민간기업에 청탁해준 경우 뇌물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령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아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을 도와주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강요로만 기소했는데 유죄가 선고될 지조차도 두고 봐야 합니다. 이렇듯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을 전달하는 것과 달리 민간에 청탁을 하는 부분은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민간이 민간에 부정청탁하는 것도 규제해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청탁금지법에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 석좌교수도 인터뷰집에서 “장기적으로 민간영역을 어디까지 청탁금지법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더 논의해 봐야겠지요. 그 이전에라도 법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라도 자기네 시스템에서 걸러 낼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준법감시인 이랄지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민간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걸러 낼 수 있는 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을 때,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요”라고 했습니다.

토론문 13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설 지 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설 지 혜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식은 토론회이지만, 발제자의 발표문에 대한 의견 개진보다는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법률가로서 느끼는 아쉬운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지만, 논의의 집중도를 위해 본 토론회에서는 금품등 수수금지 제도 중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법문과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은 제8조 제2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법문상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서로 별개의 개념 요소로 이해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그 해설서 등 모든 자료에서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형법상 뇌물죄의 그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고, 공무수행의 연결성 및 공정성 수호를 입법목적으로 한다는 두 법의 공통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해석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29조상 뇌물죄에 관하여,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 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위 판시 내용을 정리하면,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 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로 볼 수 밖에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개인적 친분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¹⁾ 즉,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시의 요지라고 파악됩니다. 결국 법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대가성을 직무관련성의 한 요소로 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직무관련성”의 개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의 그것을 차용 하였다고 해설되고 있으면서도, 정작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서도 “대가성”이 부정되는 경우를 법문상에 상정함으로써, 형법상 뇌물죄의 그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6. 10. 14.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직무관련성”이 직업 등의 유관성 의미로 오해되어서는 안돼

이와 같은 모순점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직무관련성”에 대해 금품 수수와 무관하게 직업등의 유관성이라는 의미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특정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1) 공성국, 청탁금지법강의, 박영사(2017), 117면

보입니다. 그러나 직업의 유관성만을 기준으로 따질 경우 직무관련성이 계속 확대되어 이것이 차단되는 적절한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Q&A’에서는, 판사와 변호사 사이에 항상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둘 사이에 특수한 친분관계가 있는지와 금품을 받은 이유, 시기 등 모든 사정을 따져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²⁾를 참고하면, 금품등의 제공자 측이 그 상대방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직무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제공자와 공직자등의 직업이나 업종, 직장 등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해 공직자등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들도 두루 참작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직무관련성”을 직업 또는 직종의 연관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1 “직무관련성”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가?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마치 금품등의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의 직업상 연관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취지로 오인되고 있는 것은, 수범자인 국민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직무관련성”은 불확정개념으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의 존재의의가 형법상 뇌물죄를 비롯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굳이 형법상 뇌물죄에서 구성요건으로 사용되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직무관련성”의 개념을 청탁금지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에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은 내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사실 이것이 들어가서 법이 복잡해졌다. 나는 직무와 상관 없이 무조건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그 이하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어차피 현재의 법문상에서도 실무상 관건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예외사유(특히 동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들은 기존 뇌물죄 관련 판결에서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는 사유(“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를 법정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언하자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동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할 때 2호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아니어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굳이 “직무관련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을 양산시킴에 반해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법률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토론문 14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계 영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 청탁금지법에 대한 몇 가지 제언 -

최 계 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 확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기관이지만,³⁾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갖고 있지 아니하다. 청탁금지법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집행을 위해서는 권익위에도 - 적어도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할 때 보충적으로라도 - 조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⁴⁾ 특히 언론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과 같은 사적 기관의 경우에도 조사권한은 소속기관장에게도 있고,⁵⁾ 과태료 통보 권한은 소속기관장에게만 있다.⁶⁾ 조사와 과태료 부과는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 뿐만 아니라 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한 자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사인이 기관 소속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에게까지 조사와 제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이 민간영역에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고려 없이 생긴 일인지, 민간영역의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자체적인 조사와 제재 여부의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인지 확실치는 않다. 다만 후자의 경우라도 조사와 제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는 권익위나 그 밖에 적절한 공적 기관에 조사와 과태료 통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청탁금지법 제12조

4) 청탁금지법 제14조 제6항

5) 청탁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6)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

2. 청탁금지 규제 개선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모두 규제하고 있지만 시행 1년 동안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금품수수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부정청탁금지는 공무원을 청탁으로부터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당한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고, 청탁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금지의 대상이 되며(대규모 인허가나 계획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큰데, 재량권을 유리하게 행사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 청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형적인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와 집행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 상황에서 당장 개정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차단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보다 실효적이고 의사표현도 위축시키지 않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서는 투명성(공개) 방식에 의한 규제가 있다. 미국 행정절차법에서는 쌍방 당사자가 대립하는 재결절차에서 ‘일방적 의사교환’(ex parte communication)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직자는 이를 공적 기록에 남겨야 한다. 공적 기록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은 ① 모든 서면 의사교환, ② 모든 구두 의사교환의 요지를 담은 메모, ③ ①,②에 대한 모든 서면 응답, 모든 구두 응답을 담은 메모이다.⁷⁾ 이를 응용하면, 직무의 상대방 또는 직무와 관련된 모든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불문하고 - 공적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기록에 대한 상급자의 감독 또는 공중 공개를 통하여 의사소통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의사결정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⁸⁾

7) 5 USC § 557(d)(1)(C)

8) 2016년 9월 검찰이 법조비리 대책의 하나로 채택한 ‘모든 변호사와의 접촉 기록’이 유사한 취지의 제도이다.

또 다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은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큰 청탁행위에 규제를 집중·강화하는 것이다. 청탁행위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라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일반 시민의 청탁이라면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위험성이 높은 청탁행위 유형으로는 ① 퇴직 공직자(이른바 ‘전관’)의 청탁과 ② 상급자의 청탁을 들 수 있다.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퇴직 공직자와의 의사소통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안⁹⁾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급자의 청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에게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¹⁰⁾ (부정청탁금지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로 현재 권익위 사이트에 소개된 유일한 예가 상급자가 위법한 사항을 지시한 경우이다. 소방서장이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소방서 소속 다른 공무원에게 ○○주식회사로 하여금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한 사안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 위반을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¹¹⁾

3. 불확정개념과 권익위의 유권해석

사회상규 등 불확정개념에 관한 권익위의 해석이 많은 사안에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되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고 있다. 지난 스승의 날의 경우를 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그렇지 아니하다’¹²⁾는 청탁금지법상의 기준은, 권익위의 해석을 통해 ‘스승의 날에 교사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만 받을 수 있다’는 매우 구체적인 규칙으로 변모하였다.

9) 미국의 경우 18 USC. §207(a)(1), (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퇴직자 접촉 금지’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10) 독일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제63조, 유럽연합 Staff Regulations 제21a조 제1항 등에서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11) 수원지방법원 2017. 5. 25. 자 2017과4 결정. 법원의 결정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위 사안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12)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3항 제8호

권익위의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 이러한 소소한 규칙들이 쌓여갈수록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그와 함께 필연적으로 규칙 내용의 정당성과 설득력이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자칫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 세세한 규칙들이 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이 해석을 하고, 경우에 따라 교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받고 있다. 권익위 해석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시각이 반영될 통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뇌물죄와의 관계설정 문제

청탁금지법에서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와 형법상 뇌물죄의 관계는 모호한 면이 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은 뇌물죄로 대응하기 어려우나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금품수수에까지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지, 기존에 뇌물죄로 대응할 수 있었던 금품수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처벌을 과태료로 낮추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법상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¹³⁾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법원에 통보한 행위에 대해 다시 범죄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100만원 이하의 뇌물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 잘못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청탁금지법은 그 입법의도와 달리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 권익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로 소개한 아래의 사건은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13)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단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사(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관내 포장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 감독하는 시공사의 이사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공하는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안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¹⁴⁾ 결정문에서는 직무관련성이 '높은' 자로부터 수수한 경우라는 점, 실제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과다한 기성금이 집행된 점이 적시되고 있다.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제129조에서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¹⁵⁾

그러므로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행위에서 뇌물로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종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4)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자 2017과49 결정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MEMO

MEMO

MEMO

MEMO